

FTA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기업활용방안 연구
(개인훈련)

2018년 2월

기 획 재 정 부
(김 우 태)

목 차

I. 서 론	1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II. 본 론	12
제1장 원산지 규정의 개관	12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13
3. 원산지 규정의 국내외 법규	15
제2장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18
1. 완전생산기준	20
2. 실질적 변형기준	21
제3장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30
1. 미소기준	30
2. 누적기준	31
3. 운송요건	49
제4장 원산지 검증	53
1. 원산지 검증 개요	53
2. 원산지 검증절차의 복잡성 증가 등 이슈	57
3.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방식 연구	58
제5장 주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	61
1.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66
2.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97
3.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28

제6장 FTA 원산지규정 비즈니스 모델	8
1.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FTA 비즈니스 모델	8
2. 해외임가공 및 반제품 현지조립수출 활용 모델	87
3. 섬유업계 FTA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	8
4. 역내국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89
5. 친환경품목 FTA 수출형 모델	9
Ⅲ. 결 론	92
제1장 연구결과의 요약	92
제2장 정책제언	95
1. FTA 원산지 규정 활용부진의 원인	9
2. 개선방안	96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칼빈슨연구소(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3. 훈련분야 : 경제 · 통상(FTA 원산지규정)
4. 훈련기간 : 2017.8.16 ~ 2018.2.13

훈련기관 소개

명 칭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in The University of Georgia
소재지	201 North Milledge Avenue, Athens GA 30602 U.S.A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viog.uga.edu
설립목적	조지아 주 및 전 세계의 공공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1927년 설립 후, 90년간 국내외 공공정책, 경영, 산업분야의 연구 등을 통해 정부기관 리더를 양성, 공공부문 서비스 개선 등에 기여
조직	교수 44명, 직원 100여명, 학생수 약 20,000명 등
주요인사 인적사항	Laura Meadows (Director): M.P.A., Brenau University Rusty Brooks (International Center Director): Ph.D., University of Georgia
주요기능 및 수행업무	세계 각국의 입법개발 등 공공부문 및 정부정책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방문하여 협동 리서치를 추진 공공부문 혁신리더 양성, 21세기형 공공부문의 기여방안 마련, 국내외 전략적파트너와의 협력 등을 비전으로 함
교섭창구	(담당) Taesik Yun, Ph.D.(International Center Manager) (전화) +1-706-542-0165 (e-메일) tyun@uga.edu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련자	김우태	직급	행정사무관
소속	기획재정부		
훈련국	미국	훈련기간	2017.8.16~2018.2.13
훈련기관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FTA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기업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매수	100매
내용요약	<p>오늘날의 국제통상의 패러다임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와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 중심의 양자주의가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FTA는 지역간 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를 통해서 협정국간 관세특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5개, 52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한-중-일 FTA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한 TPP, 중국을 중심으로한 RCEP 등 여러국가가 참여하는 범경제권역의 FTA 이슈 등이 최근 국제통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각국간의 배타적인 무역형태는 현재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하는 것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제고와 통상확대를 위해 무엇보다도 특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FTA 협정을 통해서 통상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혜택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FTA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약 50%의 수출중소기업만이 FTA를 활용하는 정도로 봐서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FTA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FTA 활용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원산지규정의 이해이다. 기본적으로 당사국간 자유무역협정인 FTA는 역내국의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역내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점점 신기술 등이 개발되고 생산 프로세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검증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도 더불어 복잡해지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절차또한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국간 체결되는 FTA도 제각각 다양한 규정들이 적용됨으로써 그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원산지규정을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사용하며 새로운 보호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도 있다.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이 각 국가별이나 품목별로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완벽히 이해하고 적용하</p>		

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난해함으로 인해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 등은 FTA를 이용하고 혜택을 반감시키고 결국 FTA 활용을 저해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체결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역량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본 보고서는 원산지규정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원산지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세관 등 많은 공공기관들이 원산지규정 분야의 지원 등을 위해서 사업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보다 실제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기업역시 전문인력 양성 등 자구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여 FTA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크게 이론적 분석과 활용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원산지규정의 이론으로써 기본적인 개념과 법원, 원산지 결정기준의 분류 방식과 각 결정기준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미 FTA 등 주요한 3개 경제권역과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연구하여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원산지검증절차, 비즈니스 모델 등을 연구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각 FTA 협정문, 국내외에서 발간된 FTA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단행본, 연구논문, 연구 보고서, 관련 법령 등 참고문헌을 이용하였다. 특히 관세청 등 공공기관 통계 등을 주로 활용하고, 또한 미국 현지의 관련 문헌, 언론보도 자료, 통상전문가, 수출기업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의 입장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체결된 FTA마다의 다양하고 어려운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원산지 결정기준의 실제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현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원산지규정이란 물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FTA의 핵심이다.

원산지규정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국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FTA 특혜관세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규정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 최대한의 FTA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중요하지만 기업으로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양당사자가 FTA 시대에 선도적인 포지션을 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 서 론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년 10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FTA 개정협정에 착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 협상은 빨라야 '18년 초에나 시작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개정 협상 전에 한미 FTA의 영향을 먼저 분석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의 주장대로 정말 한미 FTA가 미국 무역 불균형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측은 '17년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공동위 이후 한국의 입장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라'며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쓸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미국은 '협정 폐기'까지 거론하며 개정 협상을 압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고, 취임 이후에는 미국이 맺고 있는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수년 동안의 진통 끝에 지난 2012년 발효되었던 한미 FTA의 재협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산업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적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고위급 정부 인사들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협정(job killing deal)"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약 두 배 이상이나 증가했음을 표시하며 자동차와 철강산업이 대표적인 불공정무역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를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133억 달러('11년) 수준이었던 것이 발효 이후 283억 달러('15년)로 증가하였고, 5년간의 평균 무역수지 적자 수준도 FTA 발효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120억 달러에서 약 237억 달러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봤을 때 무역수지 적자 수준만 살펴보면 두 배이상 증가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원인을 오로지 한-미 FTA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 미국과 한국 모두 전체 교역량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교역량은 증가하였으며 미국과 한국 양국간의 수입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드는 상황하에서도 양국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양국간의 FTA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한-미 FTA가 상호적으로 이익을 보는 협정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상호 보완인 관계를 띠고 있고 무역에 있어서도 그 보완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을 보면 대부분 미국의 대외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품목들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30대 품목 중에 26개가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이후 미국으로의 한국의 수출증대는 대부분 무역전환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해당산업이 피해를 당한다고는 사실상 보기 어렵다. 이미 자동차, 철강산업 등은 미국에서는 이미 사양산업이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양산업의 근로자들은 밀려들어오는 수입품으로 인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품목들을 수출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 적대적이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자동차, 제조업 강국들의 수출 공세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미국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한-미 FTA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FTA 체결이후 적자폭이 점점 증가한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FTA 이전에는 우리의 관세, 비관세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 등을 그 원인으로 미국에서 지적했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한국 수입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자동차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역수지의 적자 확대가 한국의 무역장벽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한-미 FTA가 미국에 게 불리한 일방적인 조항이 아니고 특별히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무역장벽 등을 통해 차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업종은 미국 직접투자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한국의 대미 투자는 상당부분 증가하였고 이러한 직접투자 효과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관련산업의 국내 기업과도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 FTA 외에도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NAFTA 재협상 개시 의사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재량권 확보, 반덤핑 상계관세 심사와 분쟁해결 관련 조항의 철폐의 명시 외에는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오래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의 완만한 논조를 보였다. NAFTA 재협상은 오래된 조항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 및 고용감소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과 환경 및 노동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NAFTA 특혜세율(무관세)의 철폐·인상이 실현될 경우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의 우회수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NAFTA 재협상은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최초의 무역협정 협상으로 향후 협상의 시금석이 될 전망으로 협상경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NAFTA 재협상 목표'를 살펴보면 USTR은 무역적자 감소를 통한 무역균형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1994년 NAFTA가 발효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약간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적자가 늘어났고 지난해 대멕시코 무역적자는 640억달러에 육박했다. 공장 폐쇄와 일자리 해외 유출, 정치적 약속 파기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천명하며 특히 적절한 방식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력을 얻기 위한 NAFTA 국가들의 환율조작을 방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는데 이 조항은 아시아 무역 파트너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USTR은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 미국 품목의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덤핑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

록 가로막는 무역 분쟁 구조를 손질하고, 미국 농산물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통신 및 금융 부문과 같은 서비스 거래와 음악 및 전자서적과 같은 디지털 품목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무산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RCEP은 ASEAN 10여개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16개국이 참가하는 최대의 경제협약체라고 할 수 있다. 가입된 국가들의 전체 인구를 보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전세계가 생산하는 GDP의 30%나 된다. RCEP은 '13년 5월부터 협상을 개시한 이래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16년부터 각국의 정상들이 신속한 협상 지침을 합의함으로써 현재까지 타결을 위해 활발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선언으로 TPP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에 대한 비중과 관심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RCEP 참가국들은 현재 상품·서비스 분야의 후속 양허물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면서 품목별로 관세의 인하 및 철폐에 대한 기한, 12개 분야의 협정문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다자간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무역협정별로 그 핵심인 원산지 규정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 제도는 크게 판정이라는 법률요건과 이에 따른 법률효과 부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법률효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판정의 기준도 그 법률 효과에 따라 달라야 함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WTO, NAFTA, 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도 그 법률효과에 따라 달리 부여하여야 한다. WTO는 회원 가입국간에 최혜국 대우 원칙을 부여한다. NAFTA는 북미 3개국간의 관세특혜를, FTA는 체결 당사자국 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한다. 이러한 협정은 크게 다수 당사자 간에 맺어진 것과 양자간에 맺어진 것으로 구별된다. 원산지 규정은 이러한 협정의 가입 체결국과 비가입 비체결 국가간의 구별을 시도한다. 목적은 관세 특혜라는 법률효과이다. 이러한 법

률효과는 당해 국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쌀과 같은 농산물이 민감한 반면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자동차가 민감하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부여할 법률효과를 정한 다음, 그 판정 기준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관세의 혜택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그 원산지 판정 기준이 가입국 체결국 간에 통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는 않다. 먼저, 다수 당사자 간에 체결된 무역 협정에서는 두 가지 원산지 판정 규정이 필요하다. 하나는 다수 당사자 국가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관련한 원산지 규정과 어느 나라의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련한 원산지 규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당해 협정 가입국 간에 가공을 나누어 한 경우, 이러한 가공을 합쳐서 회원국 또는 가입국 원산지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원산지 규정은 당해 회원국 또는 가입국 산으로 판정한 경우,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다. NAFTA에서는 Chapter4에서는 당해 회원국으로 볼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고, Article 311에서는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결정할 기준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한-아세안 FTA의 상호 대응 세율이다. 상호 대응 세율은 우리나라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A라는 물품을 민감 품목으로 정하였다면, FTA 협정상 이들의 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최혜국 세율인 40%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이를 수입하는 태국에서는 비록 A에 대하여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A라는 물품의 제조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국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다음, 이를 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회피 할 수 있다. 즉, 다자간 FTA에서 당해 회원국 역내 생산으로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 등으로 어느 국가가 원산지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산지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리는

단순하다. 즉, 원산지 판정에 따른 법률효과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라는 법률요건을 규정해야 하고, 그러한 원산지 판정 기준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질서를 규정하기 위해 1947년 다자간 국제통상규범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위해 GATT가 출범하고 47년간 8차례의 무역라운드를 실시함으로써 관세인하와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기틀을 다졌으나, 1986년 실시된 UR협상이 1994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타결됨에 따라 그 결과로 1995년 다자간 국제기구로 기능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관세,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핵심으로 자유무역, 무차별대우, 상호 호혜주의를 계승하고 모든 물품을 개방하는 등 그 간 GATT에서 제외되어온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국제무역규범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즉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은 물품무역(GATT), 서비스무역(GATS), 지적재산권(TRIPS), 투자, 분쟁해결 등 포괄적 규범을 다루고 있다.¹⁾

최근의 국제통상질서는 이러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협정과는 별도로 지역주의 체제로 일컬어지는 지역무역협정(RTA)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102건에서 2015년 4월 현재 총 39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물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31건, 서비스협정 128건, 개도국간 특혜협정 15건, 관세동맹 25건으로 집계된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에 전체 FTA 건수(399건) 중 약 87.5%를 차지하는 359건이 발효되었다. 이렇게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체제에서 FTA의 양자체제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통상정책에서 탈피해 세계각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이 계속 큰 폭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수

1)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출판사, 2009.07, p.42.

출의 어려움은 단기적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당분간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성장속도의 저하 등 여러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우리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위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발생한 우리 수출의 부진은 전세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본 엔화의 약세, 유가 하락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 등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추격등으로 인한 국내 주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전체 대외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은 암울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8.4%)와 반도체(3.7%), 컴퓨터(2.6%)에 불과하다. 중국 등의 신흥 경쟁국가들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는 자동차(-5.8%), 철강(-13.1%), 석유화학(-21.6%), 섬유(-10.9%), 평판디스플레이(-5.4%)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산업분야에서의 수출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 수준이 예전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반도체 등 주요 수출산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수출 지역도 중국 등 신흥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의 경제 침체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경기불황의 신호가 커짐에 따라 세계경제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로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온 이래 현재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약 80%가 넘는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무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상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FTA를 적극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와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에겐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EU, ASEAN 등 2017년 현재 15개 경제권, 52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또한 한-중-일 FTA, RCEP 등 기타 거대 경제권역과의 협상도 진행하소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 중소 여러국가들과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 중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교역량은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한-중-일 FTA, RCEP 등의 협상이 발효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약 90%에 이를 정도로 우리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동시다발적인 전세계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인하여 우리의 시장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각각의 FTA별로 그 협정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FTA의 과실을 누리기엔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이 크다. FTA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FTA를 충실히 이용하지 못하여 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FTA를 이해하지 못하고 노하우 부족 등으로 FTA 관세특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FTA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예산 등 각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FTA 활용이 수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 및 인하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 관세율, 통관절차 등에 대한 확인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원자재의 글로벌 아웃소싱, 글로벌 생산이 만연한 오늘날의 기업들로써는 생산한 품목의 원산지가 FTA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특혜관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Rules of Origin)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생산시설, 생산방식, 원자재와 부품의 조달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원산지 요건에 맞는 생산방식과 부품을 선택함으로써 특혜관세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FTA 체결에 따

른 특혜관세 적용시 원산지 인정 범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 생산방식과 수출거래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친다.²⁾

이러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잘 활용하면 수출증대 효과를 쉽게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속 정밀가공 기계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체는 지난 해 대구경북 본부세관의 FTA 원산지관리 교육을 받은 후 전체 수출 물량의 70%가 EU 등 FTA체결국에 집중되다 보니 FTA 원산지 관리만으로 수출액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은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을 위한 이해가 부족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규모를 보면 전세계의 60% 정도로 전세계에서 높은 수준(5위)을 자랑하지만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약 50%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발효된 FTA의 이익을 위해서는 관세특혜를 적용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인정여부가 FTA 활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가격인하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이러한 FTA 원산지규정과 검증절차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제통상환경의 도도한 흐름인 FTA 체제하에서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한 최우선 조건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기본으로 실제 산업별 원산지 판정사례 및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등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활용 실태조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진행

2) 박준현, 「FTA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결정기준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12. p.3.

되는 가운데 미국 섬유산업연합회(이하 NCTO)는 미국 섬유업체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한 건의서를 USTR(미국 통상대표부)에 제출했다. 특히 NCTO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USTR에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양 포워드 규정(Yarn Forward Rule)과 단일 공정 규정(Single transformation Rule)상 예외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섬유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의 NAFTA상 양 포워드 원산지 규정의 예외적인 조치로 관세 특혜 수준(TPL, Tariffs Preference Levels)을 규정하여 원사, 직물의 원산지가 역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이나 봉제공정이 역내국가에서 진행된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인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 중국과 베트남 원산지의 직물이 면세 수출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의류는 2억3,600평방미터, 원사는 1,280만 kg 상당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NCTO는 또 단일 공정 규정(Single Transformation Rule)에 의해 실이나 직물 원산지가 역내국이 아니라도 역내국에서 재단, 봉제가 이뤄지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남성 드레스 셔츠, 면으로 된 잠옷, 특정 하의, 브라와 실크, 리넨 의류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줬던 조항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NAFTA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챕터 19'가 될 전망이다. 챕터19에서는 회원국가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발동하는 반덤핑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미국은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멕시코는 분쟁 해결 절차를 제거하는 것은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수출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positive) 제도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환율 조작 금지를 제시했다.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자국 수출품 접근성을 개선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NAFTA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상대국가간 환율 조작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이번 개정의 목표로 명시했다. USTR은 또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원산지 규정을 개정해 미국산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USTR이 진행한 'NAFTA 현대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전략을 진단했다. 한·미 FTA 자체가 NAFTA 공청회에서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미 FTA는 잘 만들어진 무역협정으로 NAFTA 현대화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영화협회에서는 한·미 FTA간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의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가하면서 NAFTA 재협상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에서는 한·미 FTA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예외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해석의 불투명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논평했다.

농업·낙농업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곡물협회는 한·미 FTA가 보여준 긍정적 영향을 토대로 NAFTA의 협상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제조자연합회는 NA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 기준을 강화해 협정국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조업체인 티타늄금속사도 한·미 FTA 발효 후 원산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미국 티타늄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면서 미국서부제지노동자협회는 한·미 FTA 협정 발효 후 4년간 10만개의 일자리 피해가 생겼고 무역수지 적자가 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NAFTA 공청회에서 나타난 미국 산업별 의견을 검토해 한·미 FTA 지지 세력을 구성하고 FTA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I. 본론

제1장 원산지 규정의 개관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개념

원산지란 관세의 징수·부과 및 감면제,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위해 각종특혜무역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국가(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 포함)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나타내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³⁾,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나 속지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도시 및 지역도 독립적인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가진 보유국 등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가 될 수는 있다.

따라서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조립이 이루어진 국가나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대별되는 개념이며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등 정보전달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물품이나 식물품 및 동물품 등 천연물품 위주의 생산품은 원산지의 판별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공산품 등 2차 공업산품 등은 원산지 판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정보를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하므로 원산지표시제도 및 절차가 무역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각국의 자의적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으로 국제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산지에 대한 국제규범으로 통일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마련 중에 있다.⁴⁾

3) 성윤갑, 「한국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p6.

4) 성윤갑,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8.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중요성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생산비를 절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해외 글로벌 아웃소싱과 생산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의 결정은 더욱 어렵게 된다. ‘어디까지 생산, 공정이 진행되어야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할 수 있는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기타 다른 무역정책수단과 결합되거나 이용방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무역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세계무역의 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통합 양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진행된 지역간 무역협정(RTA)의 확산과 심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의 확대와 성장이라는 이유로 각국들이 전략적으로 F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⁵⁾

이처럼 FTA가 확산이 진전됨에 따라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중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원산지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이 달라지고 이것으로써 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방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⁶⁾

국가간에 교역되는 물품들의 생산에 있어 다수 국가의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이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의 특혜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 기준이 필요하다. 국제무역에 있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각국마다 상이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존재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표준도 부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적용 가능성 등으로

5) 심동섭, 서청석,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전략적 대응실태에 관한 연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06, pp.80~81.

6) John J. Barceló III,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세계무역기구(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49, Cornell Law School, 2006.12, pp.2~3.

인하여 상당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기업들이 물품들의 글로벌 생산을 확대하면 할수록 해당 품목의 국적을 나타내는 원산지의 결정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⁷⁾

최근 국가간에 교역되는 물품들의 생산에 국제적인 아웃소싱이 적극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물품들의 교역증가는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특혜조치를 받는 국가의 물품들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이슈이다. FTA에서 특혜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역할은 주로 회원국간에 거래되는 물품들에 대해 특정한 FTA 특혜조치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무역편향⁸⁾을 회피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⁹⁾

FTA에서 무역의 편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제정은 무역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엄격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제정함으로써 FTA체결국의 수출업자들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게 회원국(역내)의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FTA하의 특혜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인하되지 않는 무역장벽을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무역전환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¹⁰⁾ 결국 최종품목 및 중간품목에 대한 명목보호율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7) 양정미, 「특혜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해석과 적용: 세계무역기구(WTO)와 FTA하의 조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12. pp.20~21.

8) FTA 체결국 각각이 비회원국에 대해 무역장벽(고관세 등)을 유지하게 되면 무역편향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회원국들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FTA국가 중 더 낮은 관세율을 가진 국가로 비회원국의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9) 이 문제는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특정 유형의 무역편향을 예방하는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몇몇 경제학자들이 FTA가 세계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고 관세동맹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관세동맹의 경우에도 관세동맹 회원국들이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 및 안전기준 등 개별적인 무역정책 및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역편향 효과가 발행할 수 있다.

10) 무역전환의 범위는 협정에 포함된 특혜의 규모,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엄격성, 회원국간 외부관세율의 차이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FTA에 포함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어떻게 정의되었든 간에, 생산을 왜곡시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FTA는 회원국 산출물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생산자들은 이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무역 및 투자의 전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을 충족하기 위해 FTA 회원국에 대한 부가가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중간재 품목의 교역은 제3국으로부터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3.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국내외 법규

(1)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국내법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를 규정하는 관련 규정으로는 특혜문제를 주로 규율하는 것으로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고, 비특혜문제는 '대외무역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¹¹⁾ 또한 하위 규정인 관세청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경우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모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서 특혜 및 비특혜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동 고시의 경우 스스로 규율하는 내용은 다소 빈약하지만 여러 법률 제규정을 하나로 아울러서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¹²⁾

1964년 관세법 시행령 제1조 원산지 증명제도를 통해 협정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및 증명서 요건조항이 신설되었고 1976년 이후 원산지 결정기준의 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적용되는 물품 6개 유형을 도입하였으며,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였다. 1993년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에 대하여 통관 불허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단속권을 강화하여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 재반입을 규정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가 운영되었다. 이외에도 물품의 교역에 수반되는 부속물에 대한 원산지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단순가공품과 운송관련 원칙을 제정하였다. 원산지 위반에 대한 환적화물 등의 유치제도, 수입신고전 원산지 확인요청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원산지제도의 기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원산지를 비롯한 모든 물품표시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거나, 오인을 일으키도록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7조 및 제19조에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12) 성윤갑, 전계서, pp.25~26.

반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게 되었다.¹³⁾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 판정,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FTA 특혜법령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롯한 원산지 관련 제도 및 규칙을 체계화하였으며¹⁴⁾ FTA 국내법으로는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3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¹⁵⁾

(2)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국제법규

1973년에 합의된 일본 교토에서 체결된 교토협정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범으로서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토협정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두 가지 큰 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가공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교토협정은 원산지의 판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입국가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강제성 또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일규정으로서 발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각 개별국가들은 통일된 국제통일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각 협정마다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정하고, 실시함으로써 FTA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13) 조성제, 「WTO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7, p.78.

14) 조성제, 전계논문, p.77.

15) 양정미, 전계논문, pp.26~30.

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각국마다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개별적이고 자의적인 적용 등을 억제시키고 무역장벽을 완화,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부속서에는 원산지협정을 제정하고 있는데 또한 이를 근본으로 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전세계적으로 통일시키는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규정하기 위해 각 개별국가들이 현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각 개별국가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해·배타적 경제수역·심해저 등에서 획득된 어획물과 광물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 섬유·철강·전자제품 반도체·자동차·농산물 등의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분야에서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의 진통으로 인해 현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래에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합의가 되면 국가간 통상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고 무역증가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기본 이념은 자유무역의 확대, 무역장벽의 철폐, 비특혜 무역에의 적용, 동등한 국가별 무차별원칙,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 객관적이고도 예측가능한 상황의 보장, 원산지 판정 및 구제 절차의 보장, 불소급의 원칙과 비밀의 보장 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크게 총칙과 2개의 부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서문(Preamble)으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협정과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관계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2장 정의(Definitions)에서는 생산, 물질, 원산지, 비원산지 물품 등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3장 일반규정(General rules)에서는 적용범위,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방법 등 전체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에서는 완전생산품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부속서 2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으로 실질적 변형 기준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¹⁶⁾

제2장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전세계에서 아웃소싱하는 글로벌한 생산방식이 보편화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걸쳐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품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목적에 의해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 또한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핵심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제정되지 못하고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어 왔는데, 크게 활용되고 있는 모델로는 통상적으로 EU의 판유로 모델과 북미지역의 나프타 모델이 있으며 그 외 기타 지역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혼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판유로 모델은 국가별로 가장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역내 원산지협정안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역내국가에 대해서는 미소기준(de-minimis), 롤업기준(roll-up), 누적기준(cumulation) 등을 허용하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쉬운 모습을 가지나, 외부적으로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는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면서 부가가치기준 산정시 주로 수입산 함량비율(MC: Import content)기준과 가격산정시에 공장도인도가격(EXW: ex-works price)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 각 품목별로 단일한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안(alternative)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역내국간에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개념이 적용되어 단일영토(single territory) 개념이 적용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나프타 모델은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원산지협정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역내 수출업자들에게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4단위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미-요르단, 미-이스라엘간 FTA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부가가치 포함비율(VC: Value content)에 따라서 원산지를 판정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 산정시 역내부가가

16) 성윤갑, 전계서, p.41.

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민감한 산업의 경우 높은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을 적용하여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품목별로 부가가치 기준율과 그 계산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원산지 판정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누적조항의 경우 FTA 체결당사국의 원자재만 한정하여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만 인정하고 있다.

혼합모델은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EU의 판유로모델과 북미의 나프타모델을 혼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타 다른 협정들과 비교하여 산업보호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교적 단순하여 FTA의 원목적에는 부합되는 바가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의 부족으로 회원국간 분쟁의 여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AFTA¹⁷⁾와 방콕협정¹⁸⁾을 살펴보면 40%의 RVC(Regional value content) 충족과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으로 비교적 단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기준을 인정하지만 ASEAN FTA 협정의 경우에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원산지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 산정시에는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VC)을 적용하고 있다.

통상 FTA 협정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 기준이 적용되고 이러한 일반적 기준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충적 기준이 활용된다. 일반적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고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

17)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끼리의 관세인하와 관세장벽 철폐로 동남아시아지역내의 무역거래 자유화와 활성화를 통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블록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자 결성되었다. 참가국은 10개국으로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며,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AFTA 설립을 합의하고, 1993년 1월부터 AFTA가 정식 출범하였다.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기존 6개 회원국은 2010년까지, 후발 가입국은 2018년에서 2015년까지 3년을 앞당겨 역내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하였다.

18) 공식명칭은 ESCAP 개발도상국간 통상협정에 관한 제1차 협정(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ESCAP)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조치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내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5년 7월 서명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한국, 중국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1. 완전생산기준

특정 품목의 원자재 취득 및 모든 생산의 과정이 하나의 국가 또는 당사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고 그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부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충족되어야 하지만, FTA 등에서는 2,3국 이상 당사국 영역을 누적영역(Cumulative territory)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양 당사국 영역에 걸쳐서 생산될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정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대체적으로 1차 산품, 즉 당사국 영역안에서 채굴한 광물성 생산물, 당사국 영역안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생산물, 당사국 영역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동물과 생산물, 당사국 연안에서 획득한 농수산물, 영해 밖의 해저에서 채취한 물품, 이러한 물품들을 원자재로 하여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완전생산기준은 미소기준¹⁹⁾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원산지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다.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당사국 안에서 당사국의 원자재만으로 물품을 완전히 생산하는 것이므로 작금의 경제의 세계화와 다국적기업의 확산, 원료의 글로벌소싱 및 물품의 글로벌 생산의 일반화가 보편적인 현 상황에서는 그 적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완전생산기준의 그 유형은 각국의 FTA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당사국의 산업구조,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소한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의 경우 FTA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 영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선박의 기국요건(국기 게양여부) 및 등록요건(선박의 당사국 등록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기국요건과 선박 등록요건을 동

19) 최종제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즉 원산지 인정의 최소허용기준이다.

시에 충족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에서 제외하고 있다.²⁰⁾ 다만 예외적으로 한-칠레 FTA의 경우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칠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한-EFTA FTA의 경우 당사국 선택요건으로 기국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적 변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의 핵심으로 원자재 조달 및 물품의 생산이 2개국가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아웃소싱, 글로벌 생산, 다국적 기업화 등이 일반화된 현재 상황하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게 되는 실질적인 변형이 실시된 국가에게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특정물품의 생산, 제조과정을 통하여 원자재의 성질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원자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물품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적 변형을 의미한다.

실질적 변형의 정도는 곧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우회수입방지, 역내교역활성화 등 FTA의 목적과 협상의 결과에 따라 산업별, 품목별, FTA마다 상이하게 결정되게 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 세 가지 기준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세 가지 기준들 중 한 가지만 적용하는 단일기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는 조합기준, 보다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1) 세번변경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다. 국제통일물품분류체계(HS코드)²¹⁾를 이용하여 활용된 원자재의

20) 윤영호, 전계서, pp.114~118.

21) WCO가 무역물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적 물품분류 기준으로 관세율표 작성, 무역통계 작성 등 관세 및 무역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도 1988년 “통일물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동 부속서인 “국제통일물품명 및 코딩시스템(Harmonized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을 생산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 HS 코드 시스템(HS 2012) 예시

HS 코드	부(section) (총 21범주)	류(chapter) (총 97범주)	호(heading) (총 1,224범주)	소호(sub-heading) (총 5,205범주)	품명
09	2	09			식물성 생산품
0901			0901		커피
0901.11				0901.11	볶지않은커피

FTA 협정시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대부분은 부가가치기준 등과 함께 사용되는 등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의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조건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사용되는 반면, EU의 FTA 협정과 ATIGA(ASEAN 물품무역협정) 등의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서는 원산지판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외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 등 다른 기준들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농림수산물축산물의 경우 HS 2단위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S 구조상 품목의 생산·가공단계별로 HS코드가 배열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세번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질적이라고 인정되는 제조·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4단위 변경(CTH: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등이 있는데 2단위 변경이란 원자재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했을 때 완제품의 HS코드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HS 2단위 세번변경이 HS 4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에 의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있다.

단위 세번변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되고, HS 6단위 세번변경보다 HS 4단위 세번변경이 더 엄격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공산품 등은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등 보호가 필요한 물품은 2단위 또는 4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 등 부가적인 기준이 추가될수록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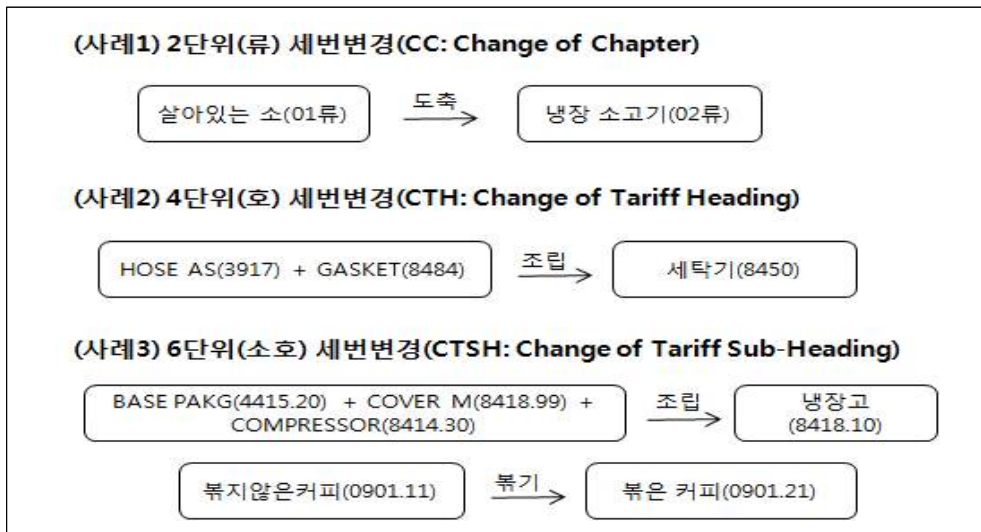
세번변경기준은 HS코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변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들에 비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FTA 협정에 채택되는 기준이 되며 나프타를 제외한 모든 협정 내용에서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안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프타의 경우 CTSH(6단위 변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CTH(4단위 변경)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EU의 원산지판정기준이 나프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의 장점으로는 첫째, 국제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다. 모든 품목의 품목분류체계인 HS 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용의 관세 용어로서 모든 국가의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둘째, 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으로 인하여 품목의 세번이 변경되었는지만을 판단하여 그 원산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원산지결정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단순하여 그 집행이 용이하다. 셋째, 일단 세번변경기준이 마련되면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원산지 결정이 환율 변동이나 기타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관세당국이나 무역종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고, 품목의 분류가 실질적인 변형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부조정(sub-heading split 등) 제도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품목분류의 주 목적은 관세율의 그 체계를 마련, 무역통계 등을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를 원산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품목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물

22)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08, pp.11~12.

품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음에도 세번이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번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분할(split)²³⁾ 등의 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품목분류를 해당되는 원산지 판정에 부합되게 보다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둘째, 류(chapter)에서는 품목 분류에 대한 깊은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셋째, 세계관세기구(WCO)는 5년마다 새로운 물품의 탄생이나 기술적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HS 코드를 새로이 개정하므로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세번변경기준도 주기적으로 신규 반영해야 하는 큰 문제점이 있다.²⁴⁾

*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사례



(2)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이란 완성된 물품의 총 가치 중에서 최종적인 공정을 실

23) 분할(Split)이란 특혜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목적상 HS코드 소호(Sub-heading) 또는 호(Heading)로는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나타낼 수 없을 경우 기존의 HS 소호 또는 호와는 다른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를 분할(Split) 세번(extra 또는 ex로 표기)이라고 한다. 4단위(호)의 품목분류를 기준 HS 품목분류와 달리 새롭게 한 것을 HS 4단위 분할세번(Split Heading)이라 하고, 6단위(소호)의 품목을 기준 HS 품목분류와 별도로 분류한 것을 HS 6단위 분할세번(Split Sub-Heading)이라고 한다.

24) 조만희,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자유무역협정」, 삼일인포마인, 2014.07, pp.140~141

시한 국가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경우에만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원산지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율 등 가격변화의 변동성에 민감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이나 무역거래자에게 서류 제출 및 확인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재료의 가격(CIF 기준)을 완제품의 기준(FOB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부가되었어야만 하는 가치의 최소비율(a minimum % of value)을 규정하거나 수입품에 귀속되는 가치의 최대비율(a maximum % of value)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세번변경기준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요 가공공정을 규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정비율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 당해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데 허용되는 수입부품 및 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의 상한을 부과하는 수입산함량(import content : MC), 둘째,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국내부가가치(domestic value added) 또는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역내부가가치포함 비율(regional value added)의 최소비율을 의미하는 국내산함량(domestic content : DC), 또는 역내가치함량(Regional Value Content: RVC) 기준이다. 셋째, 품목이 원산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체 부품 중 원산지 산 부품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부품가액(value of parts : VP)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다수의 FTA 협정에서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유로형 FTA(범 유럽형 FTA라 함은 EC, EFTA 및 중동부유럽 국가들간에 체결되는 FTA를 가리키며, EC-불가리아, EC-노르웨이, EFTA-불가리아, 체코-터키 FTA 등 50여건에 달한다)와 EC-멕시코 FTA에서는 수입산 함량과 부품가액 기준을 동시에 사용하며, 이 경우 수입산함량 요구기준은 30%~50%로 다양한데, 가액의 산정은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에 기초한다. 나프타의 경우 거래가격방법의 사용시 역내부가가치(RVC)가 FOB 거래가격으로 60% 이상이며, 직

접적인 노무 및 제조비용을 제외하는 순비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칠레 FTA는 50%-40%, 캐나다-칠레 FTA는 35%-25% 등으로 규정하여 각각의 FTA별로 상이한 역내산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역내국의 가치포함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기업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역내국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역외 원자재 글로벌 아웃소싱이 힘들어 지는 만큼 일정부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²⁵⁾ 부가가치비용의 산출방법으로는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로 파악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할 때 품목가격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직접 산출하는 집적법(Build-Up method),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할 때 품목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부가가치로 파악하는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물품의 전체적인 요소들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원산지 재료의 최소비용을 부가가치비용으로 측정하는 부품가액법(Value of Parts), 최종생산물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인 비원산지 재료가격의 비율법(Import Content: MC) 등이 있다.

* 부가가치비용의 계산방식

구 분	계산법	용어정의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RVC: Regional value Content AV: Adjusted Value(FOB or EXW)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비원산지재료가격) VOM: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원산지재료가격) NC: Net Cost(제품의 순원가: 총생산비 중 마케팅비, A/S 비용, 로열티, 선적비, 포장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이자를 제외한 가액)
집적법	$RVC = \frac{VOM}{AV} \times 100$	
순원가법	$RVC = \frac{NC - VNM}{NC} \times 100$	
MC방법	$RVC = \frac{VNM}{AV(EXW)} \times 100$	

2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FTA포털(www.custra.com).

나프타 등 미주지역 FTA에서는 역내가치함량(RVC)기준 50% 또는 60%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관유로시스템을 사용하는 유럽지역에서는 수입산함량(MC) 기준 30%, 40%, 50% 등을 사용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RVC와 MC 등 다양한 부가가치기준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AFTA의 경우는 특별히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RVC 40% 기준의 아주 심플한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²⁶⁾

* 각 FTA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상의 부가가치비율 계산법

구 분	부가가치 기준		계산방법		비고
	역외산 가치	역내산 가치	계산방법	제품가격	
나프타	40% 또는 50% 미만	60% 또는 50% 이상	거래가격법(60%) 순원가법(40%)	FOB	자동차관련제품은 더높은 RVC 비율 요구
EFTA	40% 미만	60%이상	MC방법	EXW	
EEA	40% 미만	60% 이상	MC방법	EXW	
AFTA	60% 미만	40% 이상	MC방법	FOB	
한·칠레 FTA	55% 미만 또는 70%미만	45% 또는 30%이상	공제법(45%) 직접법(30%)	FOB	혼합주는 역내산 80%
일·싱가포르	40%미만	60%이상	공제법 직접법	FOB	
미·싱가포르	40~70%	30~60%	공제법 직접법	FOB	품목별로 상이함
EFTA·싱가포르	20~60%	40~80%	MC방법	EXW	품목별로 상이함

(3) 특정공정기준

품목별로 중요한 제조가공이나 공정을 규정하고 해당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 특정공정기준인데 이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과 함께 충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정공정기준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커피제품의 경우 볶음공정을 수행한 국가, 의류제품의 경우 재단공정을 수행한 국가, TV제품의

26) 성운갑, 전계서, p.86.

경우 브라운관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되고 있다. 특정공정기준에는 특정한 제조나 공정이 존재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Positive 방식과 특정한 제조나 공정에 대해서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Negative 방식이 있다. 그러나 특정된 생산공정이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그 객관성은 담보되지만 생산공정을 왜곡시킬 수 있고 새로운 신기술개발의 도입을 저해하기도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²⁷⁾

* FTA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사례 비교

품명	HS코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의류 제품	61~62 류	CC + 국산원단요건 + 재단, 봉제요건	CC+ 재단, 봉제요건	CC + 재단, 봉제요건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개별적 규정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개별적 규정
직물	50~60 류	CC	CC	CTH or 염색 또는 날 (단,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가격의 50% 이하)		

우리나라의 경우 체결한 일부 FTA 협정에서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세번변경기준과 혼합적으로 사용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한·칠레 FTA의 경우 의류제품(HS61~62류)에 한하여 당사국에서 자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 봉제 공정을 거쳐 생산한 의류제품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봉제, 재단 공정을 거쳐 만든 의류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재료로 하여 봉제, 재단한 경우에도 그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이다. 한·EFTA FTA에서는 원단의 경우 염색공정과 날염공정을 거친 것에 대해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 원단의 가격이 최종제품 공장도가격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즉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염색 등의 공정을 거친 원단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한 원단의 가격이 최종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때에는 국

27) 김무한, 전개논문, pp.15~16.

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²⁸⁾

또한 특정공정기준의 경우 한·미 FTA 협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FTA 협정과는 달리 한·미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서는 정밀화학공업제품, 석유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특정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서 실질적 변형기준의 기본적인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고,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은 부가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협상에 따라서 품목별로 이 기준들이 선택적으로 적용, 우선되기도 하고 2개 이상의 기준이 혼합되어 복합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실질적 변형기준 특징 분석

기준	장단점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세번변경여부 등 그 적용이 쉬움 ▸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함 ▸ HS 품목분류상 물품이 가공단계별로 수직적으로 분류된 경우 적용이 용이하지만 그 재질별, 즉 수평적인 분류방식으로 배열된 경우에는 곤란함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호 등 특정산업에 있어 FTA 체결의 목적 달성에 유리 ▸ 협정문이 간단하고 분명하며 협상시간 절약 ▸ 환율, 국제원재료가격 등락 등 외부요인에 따라 원산지가 불안정함 ▸ 기준 충족을 위해 자의적으로 원가로 조작하는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원산지 소명자료 등으로 인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
특정공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가공공정 확인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 ▸ 특정공정수행을 고집함으로 인해 신기술의 개발 등을 저해, 특정가공공정에 특화되도록 공정전체를 고착화

28) 정인교 · 조정란 · 방호경 · 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ROO) 연구 및 실증분석」, 연구 05-21,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p.67.

제3장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FTA 협정에 있어서 원산지 판정의 가장 기본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의 모순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외에 부가적으로 적용하여 FTA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충적 기준이 존재한다. 특히 미소기준, 누적기준은 원산지의 인정과 상실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정들이고 현재 국제적으로도 채택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미가 큰 규정이다.

1. 미소기준

미소기준이란 최종제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재료의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²⁹⁾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비원산지 원자재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되는데 일정수준 이하의 미미한 금액만큼 비원산지 원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역내교역을 촉진하고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미소기준은 주로 세번변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에 사용되고, 부가가치기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³⁰⁾ 다만, 부가가치 산출시 미소기준에 의해 원산지 자격을 취득한 중간재료가 최종제품에 투입되는 경우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격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품목의 경우 보통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격이 10% 이하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지만 농산물의 경우는 HS 6단위가 상이하고 비원산재 원자재가격이 10%이하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는 농산물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미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제품의 경우 가격기준이 아닌 중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9) World Bank,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 2003, p.2.

30) World Bank,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 2003, p.2.

* FTA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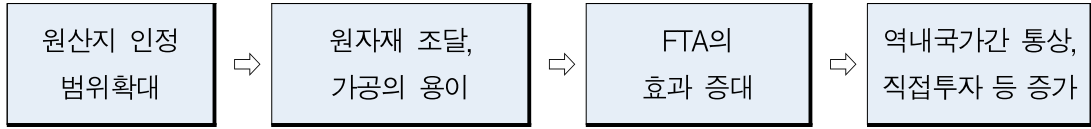
품명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일반물품 (가격기준)	8%이하 (FOB)	10%이하 (FOB)	10%이하 (EXW)	10%이하 (FOB)	10%이하 (FOB)
기초농산물 (1류~14류)	8%+CTSH* (HS 6단위 변경기준)	적용제외	10%+CTSH	10%이하	10%이하
가공농산물 (15류~24류)	8%+CTSH	10%+CTSH	10%+CTSH	10%이하	10%이하
섬유류제품 (중량기준)	8%이하	8%이하	10%이하	10%이하	7%이하

2. 누적기준(Cumulation rules)

누적기준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용논의가 가장 큰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FTA를 체결한 양 국가간 무역활성화를 위하여 역내국의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서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자재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ASEAN FTA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산 부품과 인도네시아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 면도기를 생산,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인도네시아산 부품 모두를 역내산 원자재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만 누적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적용이 곤란하고,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만 그 활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누적기준은 역내산 부품 및 재료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FTA에 의한 시장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역내교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누적기준에는 그 적용범위에 따라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대부분 양자누적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누적기준의 효과



* 우리나라의 주요 FTA별 누적규정

협정	규정내용
칠레	<p><제4.5조 누적계산></p> <p>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물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p> <p>2. 물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물품의 생산자는 그 물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물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p>
ASEAN	<p><제7조 누적></p> <p>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원산지 물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p>
EU	<p><제3조 원산지 누적></p> <p>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내에서 제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로 간주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등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p>
미국	<p><제6.5조 누적></p> <p>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p> <p>2. 각 당사국은 물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물품은 원산지 물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물품은 제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1)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체결된 FTA 무역협정의 역내 회원국 내에서 공급 및 조달된 재료를 역내산으로 모두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주로 자유무역협정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FTA 체결 당사국간에 적용된다. 양자간 FTA의 경우 관세영역은 둘 이상이지만 원산지 영역은 하나의 누적영역(Cumulative Territory)으로 인정된다.

양자누적기준의 협정문은 통상적으로 “당사국은 어느 한 당사자국의 원산지 물품이나 재료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물품에 결합된 경우에 다른 당사자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FTA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원자재도 일정한 기준 하에서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누적평가의 대상국 범위를 넓혀 FTA 체결의 당사국 뿐만 아니라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원산지재료에 대해서도 수출국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말한다. FTA 체결국이 아닌 특정국가에 대해서 차별적인 특혜관세 자격을 부여한다면 다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유사누적 규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양자누적과 유사누적의 차이점은 양자누적이 FTA 체결국 두 나라간의 누적이라면 유사누적은 국가간에 맺어진 FTA를 매개로 연결된 세 나라 이상의 다수 국가간 누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유사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97년에 만들어진 판유로 누적시스템이 있다. 동 시스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국들로부터 값싼 원자재와 부품 등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아웃소싱 및 생산체계를 갖추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그 적용지역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97년 EEA³¹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서 판유로 누적시스템을 규정하게 되었고 이에 참여하고 있

는 국가들은 EC 27개국, EFTA 4개국, 터키, 지중해 연안국가 등 50여 개국에 달한다. 이들 해당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 또는 원자재가 최종 제품에 사용되어 EEA에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유사누적기준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구조 시스템에서 적합한 기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유사누적시스템의 활용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하에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유사누적기준의 도입과 이에 대한 활용범위의 확대를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³²⁾

(3) 완전누적(Full cumulation)

FTA 등 무역협정에 의해 단일화된 특혜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또는 가공공정에 대해 원산지 자격을 부여한다. FTA 참여국에서 수행된 모든 생산공정 및 부가가치는 그 원자재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인지를 불문하고 역내 부가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완전누적 규정은 FTA 참여국들 사이에서 생산과정의 분업화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경제통합 내지 경제적 연관성을 더욱 긴밀하게 한다.³³⁾ 최근 EU와 EEA 협정 등에서 완전누적기준을 인정하여 역내 참가국 중에서 어느 한 국가로부터 원산지를 부여받은 제품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특혜적 지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⁴⁾ 또한 TPP 협정에서도 참여국들은 역내 무역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 단일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해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는 완전누적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차이점은 유사누적은 재료누적의 일종으로 체결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의 누적만 인정한다는 것이고, 완전누

31) European Economic Area(EC,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32) 권순국,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2.12, p.114.

33) 윤영호, 전계서, p.179.

34) 이성임,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활용한 수출 전략: 원산지 결정기준 활용 모델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2, p.47.

적은 공정, 부가가치 및 재료의 누적을 인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식이라는 점이다.

* 원산지 누적기준 형태별 사례

형태		FTA 사례
양자누적		ASEAN-Australia-New Zealand, ASEAN-China, ASEAN-India, ASEAN-Japan, ASEAN-Korea, Australia-Chile, Chile-China, Chile-India, Chile-Japan, China-Singapore, Dominican Rep-Central America-USA, EFTA-Chile, EFTA-Korea, EFTA-Mexico, EFTA-SACU, EFTA-Singapore, EU-Chile, EU-Korea, EU-Mexico, India-Singapore, Japan-India, Japan-Malaysia, Japan-Switzerland, MERCOSUR-Chile, MERCOSUR-India, MERCOSUR-Mexico, USA-Chile, USA-Singapore, USA-Australia
유사누적		APTA, ATIGA, ECOWAS, EU-Switzerland, GSTP, SADC
완전누적		Canada-Chile, Chile-Mexico, Japan-Mexico, Japan-Singapore, 나프타
혼합 누적	양자누적+완전누적	Korea-Chile, Korea-Singapore
	유사누적+완전누적	EU-CARIFORUM
	양자누적+유사누적+완전누적	EU-Algeria, EU-South Africa

또한, 누적의 적용대상에 따라 체결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원자재를 국산 원자재로 인정하는 재료누적, 체결당사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간주하는 공정누적, 체결당사국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부가가치 누적으로 나누어진다.³⁵⁾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누적규정

구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ASEAN	인도
재료누적	○	○	○	○	○	○	○
공정누적	○	○	○	×	×	×	×

35) 한국원산지정보원, 「손에 잡히는 FTA 실무」, 2009, p.300.

(4) 누적규정의 경제적 효과

완전누적 도입 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RCEP 회원국 전체 국가가 서로 다자간 누적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분석해보면 이를 위해 대표산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전자, 철강, 기계 산업 총 6개 산업의 제품별 공정도와 BOM을 바탕으로 다자간 재료 누적이 영향을 파악해보았다.

다자간 공정누적과 다자간 재료누적의 부가가치 증가율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완전누적 방법론 요약

순번	산업	다자간 공정누적	다자간 재료누적
1	디스플레이	① 대표기업의 제품별 공정도와 BOM 파악하여 공정누적 전과 후 부가가치 증가율 비교	① 대표기업의 제품별 공정도, 원재료 소싱국가, BOM파악하여 원산지판정 ② 양국누적을 적용한 경우다국누적을 적용한 경우 부가가치 증가율 검토
2	자동차	② 공정도를 파악하여 공정 이동 용이성 파악 ③ 공정도와 투입 원재료 HS품목번호를 파악하여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④ 산업별 이윤율과 제조원가명세서를 검토	
3	화학		
4	전자		
5	철강		
6	기계		

* 산업별 완전누적효과 총괄표

NO	대표산업	다자간 공정누적		다자간 재료누적	
		다자간 공정누적 영향도	공정누적 부가가치기준 증가율	다자간 재료누적 영향도	재료누적 부가가치기준 증가율
1	기계	높음	19%	높음	16%
2	자동차	높음	14%	다양함	1% ~50%
3	전자	높음	20%	낮음	2%
4	철강	낮음	3%	낮음	5%
5	디스플레이	높음	13%	높음	26%
6	화학	낮음	7%	높음	15% ~ 48%

첫째, 공정누적은 RCEP 회원국 중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될 때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공정누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역내산 재료를 한 단계 더 풀어헤친 1~n차 협력사의 BOM을 입수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웠던 산업에 대한 분석은 산업별 대표기업의 사업보고서상 이윤율과 공시되지 않았지만 산업별 예시로 선정된 기업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제조원가명세서를 검토하여, 역외산 재료에 포함된 노무비율, 제조경비율, 판매비와 관리비율, 이윤율 등 부가가치기준 증가율을 도출하여 고려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공정누적 적용의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산정 근거

항목	상세설명	
① FOB금액(원)	기준 값은FOB 금액을 1로 가정함	제품별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금액
② 직접재료비 (역내산)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③ 직접재료비 (비역내산)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비역내산 재료비에 ④+⑤+⑥+⑦+⑧+⑨를 가산하였을 때 역내산 부가가치기준 증가율 산출
④ 직접노무비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⑤ 직접경비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공장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포장비 등 생산관리비 포함
⑥ 제조간접비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⑦ 판매,일반관리비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⑧ 이윤	FOB금액 대비 비중 % 산출	
⑨ 산업별 대표기업의 평균 이익률	+ ⑧ 이윤금액에 가산함	출처 : 기업의 사업보고서

RCEP 역내에서 다자간 공정을 통해 역내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생산 후 RCEP 역내 최종소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에게 다자간 공정누적은 유리하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 기계 산업은 다자간 공정누적의 영향이 높은 반면, 제품과 생산공정의 특성상 다수 국가의 생산기지 활용 혹은 공정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화학이나 철강산업은 영향도가 보다 낮다. 둘째, 재료누적은 한국과 FTA 기체결국과의 양국 재료누적을 적용한 경우와 RCEP 회원국간의 다자간 재료누적을 적용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였다. 산업별 대표품목으로 재료누적 효과를 검토해본 결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은 재료누적 효과가 높지만 전자, 철강산업은 낮다. 전자, 철강산업의 재료누적 절대효과가 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증분” 역내산 비중이

낮은 것이다. 전자(가전)산업은 한국 내에 건강한 협력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관생산공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역내산율 절대수치가 원래 높은 편이고, 또한, 전자, 철강산업 공히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으로 역내산을 달성하는 빈도가 높은바, 한국 내에서의 세번변경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별 공통적으로 역내산 결정기준 충족 시 협정세율을 적용 가능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 시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간 공정누적과 다자간 재료누적은 양국누적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용이하여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 셋째, 다자간 공정누적과 다자간 재료누적은 양국누적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여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 산업별 영향도는 상이하나 비역내산으로 조달되는 비역내산 원재료 혹은 반제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유리한 효과는 커질 것이다. 한국 산업별 비역내산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완전누적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RCEP 16개 체약국으로 소싱 국가 옵션이 늘어나, 역내산 판정에 유리하다. 글로벌소싱 전문유통업체의 협력사 관리시, C/O 적기조달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한 번의 대응으로 RCEP 16개국 역내 물류이동에 널리 적용되므로 A/S부품에 대한 C/O 확보할 실익이 발생하므로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유연해질 필요가 커진다. 대기업이 A/S부품 협력사의 체계적 관리 개시할 유인이 커진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대표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산업을 예시로 검토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터보차저를 터키와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터키가 EU 중간재에 의존하는 수준이 30% 이상 높으므로 교차 누적 적용시 EU 소싱 의존도 높은 터키의 역내산 지위의 변동이 예상된다. 터키기업에 비해 EU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기업의 경우, 역내산 지위의 변동은 터키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다. 교차누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EU에 한국기업의 생산기지가 일부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EU 중간재 생산공장에서 터키로 수출하여 터키 최종공정 거치게 하여 한국 혹은 FTA를 맺은 EU 주변국 수출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EU 소재 한국기업 보다는 EU 소재 비한국기업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 교차누적은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한 -터키간 교역 증대 효과에 따른 '가두리 효과³⁶⁾'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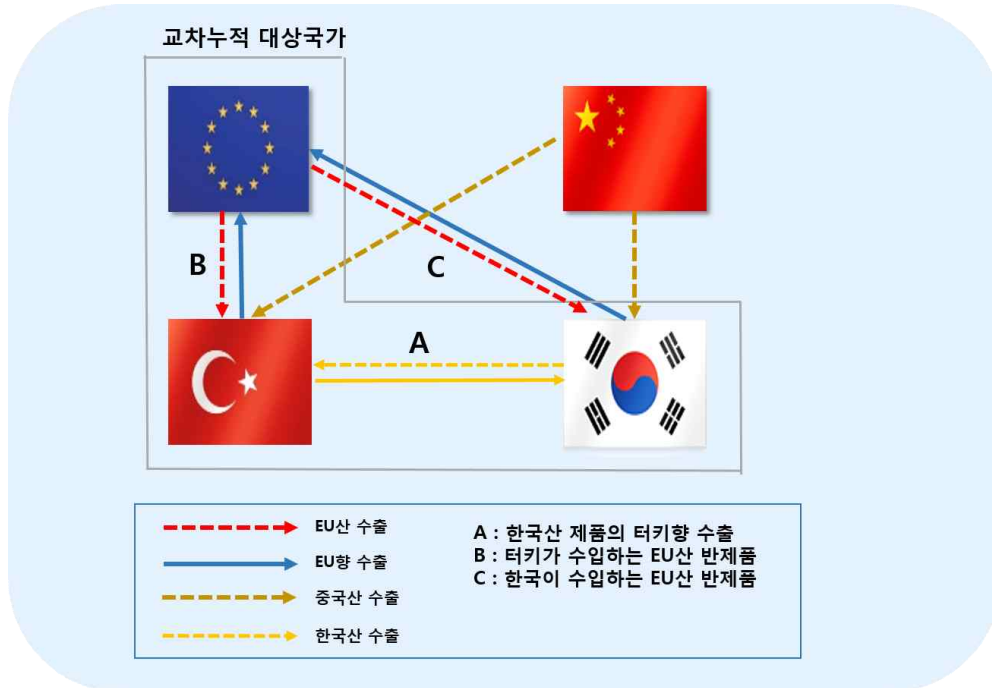
* 산업별 완전누적효과

	비역내산이나 완전누적시 역내산 전환혜택 예상되는 경우	완전누적효과
공통	①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총족이 용이한 세번변경기준 빈도가 높아, 그 동안 한국산의 역내산 판정 빈도는 높은 편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번변경 총족이 어려운 산업은 완전누적으로 혜택 입을 수 - 원재료수입 많은 비철금속 - 전자/전자 A/S부품 - 글로벌소싱업체 상품유통	유리
자동차	③ 엔진, 트랜스미션 수입한 완성차업체 (예: 외국계)	유리
자동차부품	④ 현재 주된 시장은 미국, EU임을 감안할 때, ASEAN 등 RCEP 대상국가 소싱상품이라도 타 FTA 재료누적 사용이 어려워 소싱이 적었으나, 유연한 다국가 생산공정 누적을 통해 미국, EU향 수출을 역내산 만들기 위한 직전수준으로 수입하는 등 다양한 RCEP 국가소싱 확보가능 ⑤ 이미 0%대상 반도체, 철강산업이 Upstream 협력사인 경우, 그 반도체사, 철강사가 원산지확인서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의 생산공정이 RCEP 내에 존재함과 세번변경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증명노력만 동 반도체사, 철강사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역내산화 빈도가 높아질 것임	약간유리 무관
전자, 전자부품	⑥ 구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소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무역상사를 통해 통합구매시, C/O 수령이 어려웠으나, 글로벌소싱이 주로 RCEP 대상국가에서 이뤄짐을 고려하여 동 무역상사가 유효하고 적기에 C/O를 공급하도록 환경조성 가능함. 동일한 노력으로 많은 국가를 응대할 수 있는 동 무역상사가 이전보다 역내산 총족 및 C/O 수급 등 원산지증명 확보 노력할 유인 존재 ⑦ 전자산업, 가전산업 등이 노력을 적게 기울이는 A/S용 부품 구매 후 상품수출하는 경우 포기했던 C/O 확보노력을 재개할 유인 존재	약간유리 약간유리

36) '가두리 효과'란 한-터키를 하나의 경제영역, 즉 '가두리'로 볼 때, 터키 제조자가 가두리 내 한국산 중간재를 선호하는 효과 및 자칫 한국산 중간재가 가두리 밖 독일산으로 대체될 위험을 포함하는 효과임.

	비역내산이나 완전누적시 역내산 전환혜택 예상되는 경우	완전누적효과
기계 (건설), 중공업	⑧ 중소기업인 무상사급사 BOM관리 미숙으로 인한 정보수취의 어려움이 기계산업 및 중공업의 원산지증명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임. RCEP 완전누적을 통해 수입산 부품,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기존에 국내 중소기업사에만 의존하던 역내산화 노력을 글로벌소싱 협력사의 노력을 더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짐	높음
철강	⑨ 포스코, 현대제철 등 적극 참여하나, 일부 가공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 불충족했던 현재 상황이 RCEP 완전누적시 개선될 가능성 높음. 한편, 한국산 외에 중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철강사로부터 수입한 철강소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완전누적으로 통한 C/O 확보 유연성이 도움이 될 것임	무관
철강 소재	⑩ Coil센터 유통시 중소기업을 거치면서 C/O 정보의 연결이 끊어지고, 또한 연결된다고 할지라도 fungible 혹은 traceable한 역내산과 수입산이 혼재되면 추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수입산 중 RCEP C/O 발행가능한 부분이 유리해 질 것임	무관
석유화학	⑪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충족이라 비교적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제3국 저장소 비축 후 국제적 현물시장 통한 재판매구조라 관세당국의 확인서 발행, 하나의 consignment 여부, 직접운송 여부 등 다양한 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했으나, RCEP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간 C/O 교환이 정착되면 역내산화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음 ⑫ 선물시장 거래 시 공급자와 고객 간 연결고리가 Fungible해서 고객의 C/O 요구가 어려운 거래구조이지만, RCEP 체결후, 각국 관세당국의 협업으로 C/O 교환 프로토콜이 확립되면 기존 비역내산이 역내산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짐	약간유리
정밀화학	⑬ 단순한 컴파운드 공정이라 세번변경 어려웠으나, 근본적으로 RCEP 국가에서 소싱한 원재료에 대한 역내산화가 가능한바, 전반적인 역내산 비율이 높아질 것임 ⑭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 시 해외공급자에 C/O 요구 어려웠으나 RCEP 체결후 각국 관세당국 및 RCEP 소재 글로벌기업이 RCEP의 기회를 활용하고자 참여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기존 중소기업들의 해외공급자 C/O 수령빈도 제고에 기여할 것임	유리

* 교차누적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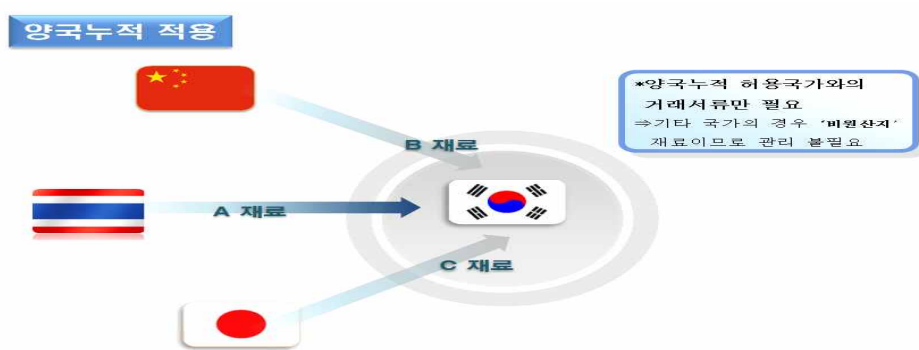


위의 그림과 같이 교차누적을 도입함에 따라 B (터키가 수입하는 EU 산 반제품)와 A (터키가 수입하는 한국산 반제품)는 경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EU향 수출과 터키의 EU향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와 B를 비교해보면 한국기업의 EU산 원재료 수입 의존도보다 터키가 EU로부터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차누적 도입 시 터키가 유리하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다수 확보한 중국과의 의존도를 비교해보면, 중국산 원재료, 반제품 수입의존도는 터키보다 한국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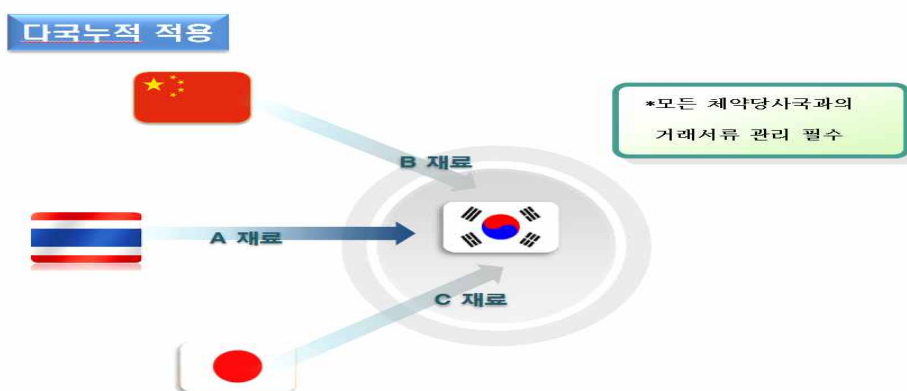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15개 FTA협정은 자동차 관련 제품에 교차누적을 적용하여 일부 미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를 제외하고 모든 협정에서 양자누적만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국 원자재와 중간재를 사용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위한 소명자료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즉, 공정누적의 경우와 재료누적의 경우 모두 일국과의 관계만을 고려하면 되므로 '원료→부품→반제품(중간재)→제품'에 이르는 다단계적 변화과정을 최종 수입자가 전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없이 수입 직전 단계에서 원산지자격을 갖추었는

지에 대한 자료만 보관하고 관리하면 된다. 그러나 RCEP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누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범위가 다국누적으로 확장되게 됨에 따라 원산지증빙과 관련된 관리비용과 시간의 소모가 대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재료누적의 경우 다수의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물품에 대한 거래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과 관리가 필수이고 이에 따라 양국누적만이 허용되는 경우 누적이 허용되는 국가로부터 공급된 재료에 대한 서류만 관리하던 것이 다수 국가와의 거래 서류 전체를 관리하게 되어 서류 보관 및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 재료누적에 있어 양국누적 적용시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 재료누적에 있어 다국누적 적용시 원산지증빙서류 관리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재료누적에 비해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과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원인은 공정누적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의 충족을 완화하는 특례규정이기 때문이다. 즉, 공정누적이 허용되는 경우 양국누적만이 가능하다면 각 거래단계별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증가한 가치의 차를 확인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증가를 추산할 수 있고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증빙이 가능하다. 공정누적에 있어 다국누적이 허용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산출하거나 다수의 역내국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된 제조·가공공정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는데 이는 해당 단계별 당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당사국에서 '원료→부품→반제품(중간재)→제품'에 이르는 다단계적 변화과정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본지사간 등 특수관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수요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해당 증빙서류를 제공할 유인이 없다는 데 원인이 있다.

RCEP의 완전누적과 달리 한-터키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차누적의 경우에는 누적이 허용되는 범위가 EU산 원자재 및 중간재로 한정되어 있어 원산지증빙자료의 관리 범위가 EU측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한정되므로 기존 누적체계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관리비용이나 시간의 소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누적규정의 확장 형태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과정의 어려움 해소와 누적규정 활용 편의 제공을 위해 원산지확인제도 등의 개선 및 제도강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산에 이용된 중간재나 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수출상품을 생산한 기업이 직접 수입 혹은 생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재료나 중간재를 공급한 기업으로부터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증명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수급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가공되거나 생산된 부품이나 재료라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나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확인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급된 원재료나 중간재의 원산지가 확

인되지 않으면 역외산 재료로 간주되게 되어 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FTA특혜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FTA특혜를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게 될 경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원산지확인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산지확인서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완전누적이나 교차누적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누적규정이 적용되게 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생산자 포함)들이 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산지확인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원산지확인서 제도와 유사한 EU의 공급자신고제도(Supplier's Declaration)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가 공급자가 임의로 원산지확인서의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원재료 공급자에게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최종 수출자의 FTA특혜 활용을 한층 수월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원산지자격을 갖춘 재료 및 공정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전체적 관점에서 최종 물품의 원산지자격 취득은 쉬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활용하는 누적의 방법과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재료누적의 경우 다양한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원재료가 공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재료의 품목번호·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등 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 원산지결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반면, 공정누적의 경우 최종 구매자가 입수한 거래 자료만으로는 개별 국가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차누적의 경우에는 교차누적이 허용되는 국가(제3국)로부터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거래 자료가 명확하여, 해당 원재료의 수입 당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당해 규정의 도입이 원산지판정의 애로를 가중시킬 가능성은 낮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다양한 첨부서류(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을 요구한다.

재료누적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로부터 수입당시 입수한 원산지증명서와 선적 서류 등을 통해 원산지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누적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여러 체약국을 거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해당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 협정에서 정한 발급권한을 가진 자가 원산지에 대한 판정을 하고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관리하게 되는데, 발급 당시 정확한 원산지증빙 자료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재료누적에 비해 공정누적은 모든 관련 자료의 일괄적인 입수가 어려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거나 오류로 발급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증명의 경우 기관증명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 보다 부합되는 제도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제품생산과정에서 원재료 등 투입요소가 상시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볼 때 최초 증빙과정에서 원산지자격 획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기업의 원산지확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원산지증명의 편의제공과 원산지자격 획득여부의 판정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대표적인데, RCEP에서도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원산지판정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원산지자격의 오류 판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방식의 경우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자율증명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도입방식은 기관발급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는 RCEP 회원국들의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체제³⁷⁾를 감안하여 일괄도입보다는

37) RCEP 측 기체결 협정은 대부분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중-아일랜드, 중-뉴질랜드 FTA는 자율발급을 검하고 있음

단계적 도입방식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RCEP내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증명방식의 도입은 한-페루 FTA의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기관증명을 시행하되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증명을 허용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자율증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확인제도의 개선 및 제도강화를 통해 누적규정을 활용하는 기업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산에 이용된 중간재나 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수출상품을 생산한 기업이 직접 수입 혹은 생산을 하지 않은 경우 원재료나 중간재를 공급한 기업으로부터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증명이 가능하다.³⁸⁾ 국내에서 수급한 원재료라 하더라도 모두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가공되거나 생산된 부품이나 재료라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나 중간재에 대한 원산지확인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급된 원재료나 중간재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역외산 재료로 간주되게 되어 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FTA특혜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FTA특혜를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게 될 경우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원산지확인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산지확인서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완전누적이거나 교차누적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누적규정이 적용되게 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

38)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생산자 포함)들이 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산지확인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원산지확인서 제도와 유사한 EU의 공급자신고제도(Supplier's Declaration)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가 공급자가 임의로 원산지확인서의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원재료 공급자에게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최종 수출자의 FTA특혜 활용을 한층 수월하게 해주는 효과 발생한다. 다만, 국내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발행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등을 보완하여 활성화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나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등은 영업기밀 유출 우려, 전담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공급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내국을 경유하면서 발생한 제도가공 공정의 수행여부 확인과 각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에 있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³⁹⁾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되 그 내용과 범위는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경우 서식 내에 공급가격과 수행된 주요공정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해 서식만으로는 공정의 수행여부에 대한 확인만이 가능하여 공정 수행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의 집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행한 공정을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여

39)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수행공정 정보와 신규로 발생한 부가가치정보가 동시에 확인 가능한 신규 서식을 협정 내에서 운영할 경우 RCEP내에서 완전누적이 적용될 경우 공정누적의 증빙에 따른 어려움 해소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운송요건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은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 조건 하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은 수입자가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운송요건은 역내 운송업 촉진이나 운송과정에서 비체약국산 물품이 체약국 원산지물품으로 둔갑되는 원산지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공정 수행 장소나 재료 조달처와는 무관하게 물품의 운송경로에 따라 원산지상품 여부가 좌우되므로 순수한 의미의 원산지기준은 아니다.

운송요건의 제시방식은 협정에 따라 협정문 상에 직접운송요건과 관련한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와 별도의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제3국에서의 허용작업만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RCEP 국가들이 기존에 체결하고 있는 개별 FTA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서 직접운송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체결한 협정 중 일-멕시코, 일-인도네시아 협정에서는 환적규정만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직접운송을 두고 있지 않은 협정들에서도 환적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된 경우 하역, 재선적,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만을 허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운송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효력 발생한다. 또한 중-아세안, 중-뉴질랜드, 중-아이슬란드,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등의 협정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이유

를 원인으로 제3국 경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기타 협정은 경유조건에 관한 별도의 제약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협정에서 모두 운송요건이 부여되어 있다. 규정형식은 미국·칠레·캐나다와의 FTA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정문에 직접운송원칙과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3개 협정에서는 제3국에서의 허용작업 범위를 규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운송규정은 FTA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물품의 체약당사국 간 이동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완전누적이거나 교차누적의 도입이 운송원칙의 강화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다국누적의 허용되는 경우로 가정하여 살펴보면 운송요건은 재료가 여러 체약국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재료누적)나, 제품의 생산 공정이 여러 체약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공정누적) 모두 각 단계별로 이동될 때에는 체약국간 직접운송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운송이나 물품 관리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예외적 허용조건이 운송규정에 적용될 경우 각 물류단계별로 물품의 흐름에 맞는 운송서류와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요구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 즉, 재료누적의 경우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증빙 없이 FTA특혜 적용이 가능하고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제3국에서 추가적인 제조·가공이 없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경우 FTA특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수의 체약국을 거치면서 제조공정이 수행되는 공정누적의 경우를 가정해 보아도 재료누적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발생한 물품의 물성(物性) 변화나 가치의 증가는 원산지증빙과 관련이 있을 뿐 운송규정과는 별개로 다수의 체약당사국을 경유한다는 이유로 운송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원산지재료가 2개국 간에 직접운송되지 않고 RCEP회원국내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국(역내국)을 출발한 원산지재료가 B국(역내국)에서 수입통관된 후 계약상이 등의 이유로 별도의 제조·가공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C국(역내국)으로 재수출 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 불충족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양자간 FTA의 경우 제3국에서 수입통관되면 전시용품 등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운송원칙 불충족으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게 되나, 완전누적을 적용한 FTA의 경우 역내 제3국의 수출자 역시 RCEP협정상 수출자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 RCEP 주요국의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분석

국 가	체약상대국	규정	경유조건	경유지 허용작업	3국세관 통제규정
중 국	아 세 안	RULE 8	지리적 원인, 경유국 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 작업	없음
	뉴질랜드	Article 25	6개월 초과 불가, 경유국 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 작업	있음
	아이슬란드	Article 33	지리적 원인, 경유국 소비금지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 작업, 탁송품 분리	있음
일 본	아 세 안	Article 31	-	일시저장,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작업	없음
	멕 시 코	Article 22	-	일시저장, 상품유지작업	있음
	인 도	Article 34	-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 작업	없음
	인도네시아	Article 40	-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 작업	있음
아세안	인 도	RULE 8	지리적 이유	일시저장	없음
	호주 뉴질랜드	Article 14	지리적, 경제적, 물류 이유	하역, 재선적, 상품유지 작업	없음

한편, 운송규정의 예외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현재 수준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RCEP내 다수 국가들이 ASEAN과 맺은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누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를 포함하여 16개국 전체가 하나의 특혜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어 운송규정의 예외에 대한 규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교차누적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EU로부터 수입된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터키로 FTA특혜수출을 하거나 반대로 터키가 EU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제품 생산 후 우리나라로 특혜수출하게 될 때 물품의 원산지자격은 개별 국가가 맺고 있는 협정이 적용되므로 운송규정의 적용은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4장 원산지 검증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은 가격의 원료나 중간재의 수급이 필수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제품생산은 세계 각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받고 생산공정조차도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의 생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FTA는 원재료(중간재 등)에 대해 조달 또는 수행된 공정이 FTA특혜를 받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누적(Cumulation)이 적용되는 범위와 형태가 확대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자격 획득과 관련된 노력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반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증빙자료 준비와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검증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원산지검증 개요

(1) 원산지검증 방법

원산지검증은 불공정무역 행위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역내 교역과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합리적 FTA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원산지검증의 방법은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절차를 직접 수행하는지,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된다. 검증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원산지검증의 대상은 특혜를 받은 물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한 아래의 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①수입자 ②수출자 또는 생산자 ③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기관발급의 경우) ④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공급·생산자(계약상대국 거주자 포함) 및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

거나 취급한 자

(2) 원산지검증 준비서류

FTA특혜를 활용하는 당사자는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당사자별 특성에 맞는 서류를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입증방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사항과 개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산지검증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업체의 기본정보와 관련된 서류, 생산업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산지관리 수행체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검증대상이 된 물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부자재 구매내역 등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에 따라 검증대상자가 보관 및 관리하거나 검토하여야 하는 서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는 주로 품목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과 최소허용기준의 적절한 적용여부를 확인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검증 시 원재료 구매단계, 생산단계, 판매단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원재료 구매단계의 경우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조달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생산단계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최소허용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는 주로 상품의 가격이나 원재료의 원산지와 비원산지 구분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검증 시

원재료 구매단계, 생산단계, 판매단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되는데, 원재료 구매단계의 경우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조달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는 주로 공정 수행 장소와 수행주체에 대한 확인, 공정의 내용에 대한 확인, 그리고 누적규정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여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원산지검증 시 원재료 구매단계, 생산단계, 판매단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데, 원재료 구매단계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달리 원재료가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조달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는다.

* 원산지검증 관련 공통 준비자료

구 분	요 구 자 료 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업 체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현황, 소개서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설명자료(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 대상업체 명칭·위치·연락처 확인 • 업체특성 파악 • 조직·인력 현황 확인 • 본사·지사·계열사 파악(해당되는 경우)
생 산 능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규모(능력) 확인 • 생산제품의 종류 확인
원산지 관 리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원산지관리 매뉴얼 •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 자료 [예시]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ERD), 약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관리 수준 확인 • 원산지관리 주체 확인 • 원산지관리 체계 확인(매뉴얼, 시스템 등)
검 대 물 정 증 상 품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대상물품 소개자료 [예시] 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 • 품목분류(HS) 근거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재료증명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 전심사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대상물품 기능·용도 등 정보 확인 • 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확인

거 래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관계 증빙 자료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P/O),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L), 수출입신고서 • 운송경로 확인서류 [예시] 선하증권(B/L), AWB • 원산지증명서(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당사자 파악 • 운송경로 파악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	---	---

(3) 기업의 원산지검증 애로사항

FTA특혜 활용의 요건은 ①거래당사자요건, ②품목요건, ③원산지증명요건(기록보관의무 포함), ④원산지상품요건, ⑤직접운송요건으로 이들 요건들은 원산지검증시 검토되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출입기업들은 이들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을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데, 완전누적이거나 교차누적을 도입할 경우 원산지검증과 관련해서는 위의 요건들 중 ③원산지증명요건(기록보관의무 포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FTA특혜를 활용하는 기업은 원산지증명과 원산지검증을 위해 원재료의 구매단계부터 제품의 판매 전반에 걸쳐 관련 서류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는데,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재료의 수급방법 및 생산방법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에 많은 차이가 있다. 원산지검증 준비서류에서 제시된 내역을 기준으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별로 요구되는 최소 준비서류의 종류는 공통준비서류를 제외하고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약 24종(원재료구매단계 7종, 생산단계 6종, 판매단계 11종 등)에 이른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약 34종(원재료구매단계 7종, 생산단계 10종, 판매단계 17종 등)에 달하는 등 단일 원재료 구매처(구매국)에서 수급된 1종의 원재료를 활용하여 전체 생산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검증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이 다양하다. 완전누적이거나 교차누적이 도입되게 되면 동일 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역내원재료의 종류가 다양해지게 되고 거래국가

(기업)의 수 또한 증대되게 됨으로써 수출기업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위해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양은 거래단계의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어 원산지검증을 위한 서류의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 원산지 검증절차의 복잡성 증가 등 이슈

완전누적이거나 교차누적이 도입될 경우 원산지검증에도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교차누적보다는 완전누적에서 원산지 검증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누적은 특성상 수출품에 대하여 역내에서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원산지신고 또는 증명과정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가장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생산자에게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준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투명한 회계준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허위·부정신고 등이 만연할 수 있고 고의로 FTA특혜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RCEP회원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SEAN과 중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준칙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완전누적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원산지자격의 소명과 검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완전누적이거나 교차누적이 도입될 경우 재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산지자격의 획득이 쉬워지나, 다양한 국가의 재료가 혼용될 수 있어 관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약국 중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원재료에 대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당해국의 당해 원재료에 대해 체약국 전체가 동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면 수입 당시에 사전검증을 통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 수입금지물품 원재료 누적시 검증불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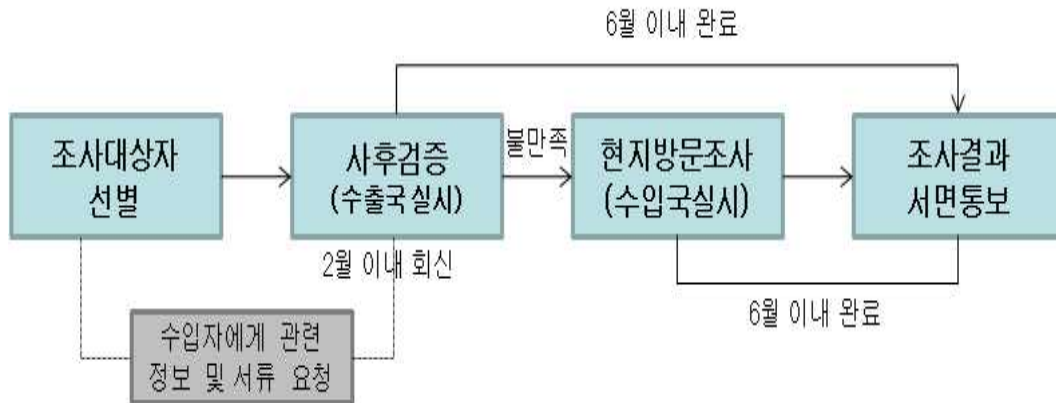
아울러 수입금지물품은 아니지만 특정국가에 한하여 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해당 국가에서 직접 수출되지 않고 인접 국가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특히, 덤핑방지관세의 경우 HSK 기준으로 특정 수출국 또는 특정 생산자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해당 물품을 인접국으로 수출하여 단순한 공정을 거치는 경우 수출국과 생산자, 품목번호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덤핑방지관세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물품 수출입 금지조치'등을 시행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물품이 인접국을 통해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방식 연구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하고 있는 FTA협정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검증 방식은 '직접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직접검증' 등 협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이중 '직접검증' 방식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직접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상대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지조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RCEP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고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으로 높으며 누적규정의 적용형태에 있어서도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완전누적이 논의되고 있어 '직접검증' 방식이 적용될 경우 관세당국의 검증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RCEP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누적은 검증대상이 수출국 일국에 한정되지 않고 역내 원부자재 공급국 및 생산공정 수행국 전체가 포함될 수 있어 '직접검증' 방식이 도입될 경우 검증과정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반면 실효성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간접검증'방식이 합리적이다. RCEP 회원국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ASEAN과의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간접검증+직접검증' 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직접검증에 따른 행정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절차



한-ASEAN FTA의 경우 재료누적만이 허용되고 있어 수출입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이 가능하나, RCEP에서는 공정누적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다수의 국가를 경유하면서 공정이 수행된 부분에 대해 '직접검증'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역내국 세관당국 간 협조를 통한 '간접검증'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간접검증' 방식의 도입과 관련한 국가 간 이견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상호지원의정서(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를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국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접검증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에도 원부자재 조달 및 생산공정 수행이 역내의 다수 국가가 관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의 요청 또한 관련되는 다수 국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에 다수의 국가가 관여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 원산지검증의 수행을 위해 회원국 간 검증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주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별, 국가별, 품목별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규모가 크고 중요하며 세계시장에서의 교역비중이 높은 3개의 대표적인 경제협정인 한-미, 한-EU, 한-ASEAN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기본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그 기본으로 하고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충적으로 미소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의 보충적 기준도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개성공단 역외지역 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품목별로 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부속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섬유 등 민감한 품목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있다. FTA별로 일부 상이하게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도 있는데 예를 들어 부가가치 산출시 한-미 FTA에서는 주로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을 사용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RVC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원자재 사용의 최소한도를 허용하는 MC(Import Content) 규정을 사용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MC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가격 산정시에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한-ASEAN FTA에서는 주로 FOB(본선인도가격)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한-EU FTA에서는 EXW(공장도 가격)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품목별 단일기준의 경우 한-미 FTA가 56.6%, 한-EU FTA가 51.5%, 한-ASEAN FTA가 1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ASEAN에서는 일반적인 결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결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2이상의 원산지기준 중 선택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원산지기준을 보다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선택기준은 한-ASEAN FTA 89.1%, 한-EU FTA 38.5%, 한-미 FTA 9%내외로 한-미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

게 적용하고 있다. 선택기준은 통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한-EU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 및 특정 공정기준이 포함된 선택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이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결합하여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비율은 한-미 FTA가 28.7%, 한-EU FTA 3.4%, 한-ASEAN FTA는 1% 미만으로 한-미 FTA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결합기준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FTA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을 보면 한-미 FTA 42개, 한-EU FTA 31개, 한-ASEAN FTA 23개로 한-미 FTA가 더욱 세부적이고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⁴⁰⁾ 즉 한-미 FTA 협정이 기타 다른 FTA 협정보다도 훨씬 엄격하고 까다롭게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의 수단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1.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별도의 협정문으로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를 들 수 있으며, 부속서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이 있는데 다른 협정문에 비해 매우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섬유 및 의류제품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민감한 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4장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 특칙'으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물품의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완전생산기준) 둘째, 일부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물품으로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기타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하는 물품(실질적 변형기준) 셋째,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만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역내생산물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40) 박명섭·조미진·이병문,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일관성 분석」,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08, pp.67~70.

완전생산기준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첨예하게 이슈가 제기되었던 쇠고기 등의 경우 양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물품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접국인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여 미국에서 가공된 경우에도 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EEZ(배타적 경제수역)는 각국의 영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선박의 국적은 기국요건과 등록요건을 동시에 요구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었을 때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물품을 제외하거나 특정공정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등 산업별, 품목별로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정교한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RVC(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산출시 집적법 또는 공제법 중에서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집적법(30~40%), 공제법(30~55%) 또는 순원가법(35%)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집적법과 순원가법의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은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정공정기준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석유제품, 정밀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화학반응공정, 정제공정, 혼합공정 등의 특정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타 FTA 협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보충적 기준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적기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채택하고 있으며 ‘물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상 생산자는 최종제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자신의 생산과 2이상의 역내 다른 생산자의 생산을 누적함으로써 그 재료의 생산은 최종제품의 생산자 자신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⁴¹⁾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원산지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를 최종제품의 생산에 투입할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소기준을 보면 비원산지 원자재의 가격이 최종재 물품가격(FOB가격)의 10%미만일 때 그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41) 한-미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제6.5조 제2항.

중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보면 비원산지와 원산지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중간재를 만들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중간재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로 인정받게 되면 중간재에 포함된 모든 공정을 역내부가가치로 인정하는 롤업원칙과 중간재가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원산지 재료의 가격만 따로 계산하여 역내부가가치로 인정하는 추적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재료는 원산지 재료 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에도 그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대체가능물품은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원산지를 결정하게 되는 개별법이 기본이다. 그러나 보관상 기술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비용으로 원산지에 따른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고물품관리법은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직접운송원칙의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밖에서 생산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단순 환적된 경우에만 비당사국 영역을 경유하게 하고 있다.

불인정공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규정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22장 부속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시 한반도 비핵화, 노동기준 및 관행, 임금관행, 영업 및 경영관행 기준 등을 동시에 정의하며 협정발효 1년 후 매년 1회 또는 양국의 합의시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제4장에서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해 별도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일부 섬유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내국가에서만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그 원산지를 인정하는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타의 보충적인 기준들을 사용하는데 미소기준으로는 섬유의 원료 또는 원사

등의 전체 중량이 7%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에 사용된 원사 등이 비원산지 재료라고 해도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관세특혜물량(TPL) 제도가 있다. 관세의 특혜물량이 적용되는 물품은 세번변경기준, 원사기준 등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미국의 자국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표에 따라 제51류, 제52류, 제54류, 제55류, 제58류, 제60류, 제61류, 제62류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인정받은 관세특혜물량은 의류 및 직물제품에 5년간 각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 이다. 기한은 연장가능하다. 또한 양국 세관간 협력강화, 정보제공, 원산지증명서 검증 및 조사 절차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 수출국 기업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은 검증을 수행해야 하고 한-미 양국이 공동심사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수출국 생산자에게 사전통보없이 원산지 조사도 가능하다.

(1) 자동차 산업

한-미 FTA 협정시 가장 민감하게 의견이 엇갈린 부문으로 원산지비율이 50%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이 일본 업체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정 주요 내용은 양국은 자동차부문에 있어 원산지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순원가법과 공제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순원가법은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성차의 경우 미국 내 발생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산정된 원가비율에 따라 미국산 인정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제법은 역외 부품 조달비용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원산지 관정비율이 50%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미국산 일본차의 국내 수입을 막기는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관세(2.5%)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고 미국은 3000cc 미만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즉시 폐지하

기로 하였다. 3000cc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한국이 당초 승용차 관세를 즉시 폐지하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던 것에 비해 미흡하지만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와 일본산 승용차의 가격차가 3% 안팎인 점을 감안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2) 개성공단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점을 강조하고 개성제품 한국산 인정 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우리 측 요구사항이 이었던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렇게 빌트인 방식으로 최종 의견이 맺어졌고 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 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지역의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미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동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개성공단 문제를 과정상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전이 있는 듯 하다 느낌을 갖게 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문에 담고 있는 내용은 개성공단의 원산지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에 의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미국이 내세우는 역외가공지역의 인정과 그곳 생산품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이 이 협정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적 이념을 지나치게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재 정치적 문제들의 선행적 해결내지는 진전의 조건으로 적시된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막연히 일정시한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와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3) 섬유

한국은 미국 측에 5년 내에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것은 물론이고 원사

및 원, 부자재를 수입하더라도 이루어지면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는 단일 실질 변형기준을 도입하고,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은 대미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그 동안 설비 감축으로 천연 및 화섬 섬유 원사가 부족하고 생산 단가가 높아 중국 등의 제 3국으로부터 원부자재의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원사생산부터 섬유와 의류의 최종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무관세 혜택을 주는 "안 포워드"라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다. 이는 원사를 제 3국에서 수입하게 되면, FTA 체결로 얻어지는 무관세 교역의 혜택이 체결 당사국 뿐 아니라 비 체결국인 원사 수출국에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서 원사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관세가 면제된 가격으로 미국의 원사를 수입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이 제시한 안 포워드 방식이 품목별 기준임을 감안해 국내 생산이 가능한 화섬사 등 일부 품목은 이 방식을 수용하고, 원사의 수입 비중이 큰 견, 면, 재생 섬유사 등은 이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는 등 협상에서 융통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안 포워드 방식이 한국에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대립이 있다.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으로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사용한다.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이나 광산품 등 1차 물품이 이에 해당되며, 자국산 원자재만 사용하여 가공한 물품도 이에 해당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와 국산 원자재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 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가공생산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모든 FTA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하나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이 물품의 시장접근과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무역정책수단을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항상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61%(수입액 기준)에 대한 관세를 즉각 폐지하고 리넨,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안 포워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대 고 관세로 수출돼 온 스웨터 등 화학섬유 의류는 4~8%대 관세율을 적용받아 온 원사나 면사 등에 비해 보다 큰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농산물

한국은 쇠고기 관세 15년 내에 단계를 폐지하고, 수입 급증할시 임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선포하였고 미국은 개방 요구 대상에서 쌀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쇠고기 위생검역 기준 완화 문제는 미국이 당초 문서로서 보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두로서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만약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에서 안전한 국가로 인정된다면 광우병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도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40% 부과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를 협정이 발효되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를 또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 금융

한국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해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보였던 금융서비스는 예상과 달리 진통을 겪었다. 미국은 일시적 세이프 가드에 대해 부정적 이었고 막판에서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경제위기때

해외 투기성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미국에는 있고 국내에는 없는 신 금융물품도 건별로 금융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정부조달

정부조달에서 자국의 물품을 우선하는 성향은 어느 나라에나 있게 마련이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33년부터 소위 바이 아메리칸법 (Buy American Act)이 있어왔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WTO를 비롯한 다자간 혹은 양자간 FTA 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들이 앞다투어 체결되다 보니, 먼저 있던 국내법과 섞여서 상당히 복잡해 지게 되었다. 매번 새로운 FTA가 체결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연방조달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흔히 "파"라고 부른다))이 개정되는데, 최근 한-미 FTA때도 마찬가지로 이를 반영하는 법규의 개정이 있었다.

현재 미국의 정부조달에는 서비스, 즉 용역의 조달이 삼분의 이 이상을 차지하기에 과거에 물품에만 한정되어 인식해 오던 사고의 틀을 넘어 과연 용역의 원산지 (Country of Origin)는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FTA에는 용역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회사가 어디에 법인을 설립하였는지, 어디에 본사가 있는지, 주요한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실지 용역 업무를 실행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로스쿨에서 배우는 소위 법인의 거주지 (Residency)나 국제 조세법 판별하고도 유사한 유권해석이 필요할진데, 문제는 미국의 연방조달규정에 단지 '회사가 어디에 "Establish" 되었는지로 판단한다'라는 불분명한 한마디만 썩여 있는 것이다. "Establish"라는 단어를 정의해 두지 않았으니 이것이 법인의 법적인 "설립"인지 아니면 실지 사무실에 간판을 달고 사람들이 일한다는 의미의 "설립"인지 알 도리가 없다. 따라서 미국연방조달공무원들은 소속된 부처 정책실의 지침 및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점점 판례를 통해 풀어야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불분명한 용역의 원산지 판별의 문제는 뒤로하고 개념이 정립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외국산 물품에 대해 미국의 정부조달시 적용되는 법규는 바이 아메리칸법으로 바이 아메리칸법은 용역은 포함하지 않고 물품만을 다루고 있는데, 계약액수가 3천불과 \$25,000 사이일때 적용된다. (2014년 현재). 법의 취지는 값이 어느정도 비슷하면 자국인 미국산 물품을 사라는 것이다. '어느정도' 라는 범위는 자국 업체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6퍼센트, 소기업일 경우 좀더 써서 12퍼센트까지의 프리미엄을 법률에서 인정한다. 말하자면 조달수요기관이 입찰제안을 받았는데 미국산 물건이 \$10,500이고 같은 품질의 중국산 물건이 \$10,000이라면 (미국산 물건이 5퍼센트) 더 비싸더라도 미국 물건을 사라는 것이겠다. 그러나 만약 위의 예에서 미국 물건이 \$12,000이었다면, 같은 품질의 중국 물건보다 20퍼센트나 비싸므로 중국 물건을 사라는 얘기도 된다. 따라서 바이 아메리칸법은 법의 명칭이 주는 인상처럼 미 연방정부 조달에서 항상 미국산 물건만을 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계약 액수가 올라가서 \$25,000부터는 FTA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각 FTA마다 적용액수가 다르나 현재는 NAFTA상 캐나다산 물품에 적용되는 \$25,000이 가장 낮은 액수임) 그럴 경우 FTA규정이 먼저 있던 바이 아메리칸법을 누르고 우위법으로 적용된다. 미 국회가 1979년 통상협정법 (Trade Agreements Act, TAA)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서 대통령에게 향후 체결될 FTA를 기존법인 바이 아메리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FTA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국산 물건 우선 정책의 장벽을 없애고 협정 대상국의 물품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똑같이 취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몰래 조달을 하면 안되니까 FTA조건에는 투명하고 충분한 입찰 유인의 시간을 주는 공고를 해달라는 조건 등 절차적인 보장도 따라 붙는다. 따라서 만약에 미국산 물품과 FTA 대상국의 물품이 입찰 경쟁에 올랐다면 똑같이 심사하게 된다. 예컨대 한미FTA의 적용대상인 \$100,000이상인 경우엔 한국산 냉장고가 미국산 냉장고보다 1불이라도 싸고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이 최고가치 (Best Value)에 부합되는 것이다.

WTO GPA는 말하자면 다자간 협정으로 여타 FTA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가지 유별난 특징이 있다. 바로 배타적 최혜국 조치이다. 다자간 통상협약 대상국의 상호혜택을 극대화 하기위해 (또한 추측컨데 비협약국에 대한 유인을 목적으로) 적용대상 액수인 \$204,000 (2014년 현재 물품과 용역에 적용, 건설은 \$7,864,000) 이상의 정부계약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통상협약을 맺고 있는 119개 국가 (FTA, WTO GPA, 및 일부 교역대상국 포함)의 생산품이나 용역 외에는 구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과 인도 등 미국과 정부조달에 관한 통상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물품이나 용역은 \$204,000이상의 계약에서는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다.

여기서 한가지 더 짚어볼 사항은 과연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어떻게 판별하는가이다. 오늘날 부품의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그 조립은 일본에서, 심지어 포장 및 마케팅 등은 기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글로벌 생산환경에서 그 원산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산지 얘기를 하면 물품의 밑바닥에 썩여있는 MADE IN USA표시를 연상한다. 그런데 일부 미국 정부의 조달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은 이 표시가 미국의 소비자를 염두에 둔 규정으로 정부조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MADE IN USA표시는 미 공정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관할하는 인증으로 말 그대로 미국의 소비자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MADE IN USA표시는 상품의 거의 모든 부품과 재료가 미국산이어만 ("All or Virtually All") 부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조달에는 계약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에 맞추어, 바이 아메리칸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테스트나 FTA 및 WTO GPA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를 따라야 한다.

바이 아메리칸법상 내국 제품 (Domestic End Product)의 테스트는 50 퍼센트를 초과하는 부품이 미국산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WTO GPA를 비롯한 FTA상의 테스트는 부품의 비율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새로운 최종 물품의 생산"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어디서 이루어 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하자면 백 퍼센트 미국 부품으로 중국에서 전화기를 생산하였다면 WTO GPA와 FTA상 중국산 물품

이고, 백 퍼센트 중국 부품으로 미국에서 생산하였다면 미국산 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물론 조립 (Assembly)과 새로운 물품의 생산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나름 난해한 부분이나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 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정부계약이 현재 WTO GPA상의 기준액인 \$204,000이상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조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Substantial Transformation" 테스트에 따른 최종 물품의 생산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만약 중국에서 생산된 피씨 타워에 적당한 메모리와 그래픽 카드를 넣어 역시 중국산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등등을 잘 조합하여 한국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여 박스에 넣어 미국 정부에 납품하고자 한다면 이 컴퓨터 시스템은 어디가 원산지일까?

요즘은 좀 잠잠해 졌지만 지난 5월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BSE) 소가 발견되면서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만큼 소와 관련한 품목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각국의 FTA에서 관세혜택의 시작점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출입품의 품목번호이다. 품목번호를 결정해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원산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소의 품목번호는 제01류에 분류되고 도축하였을 경우 제02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이하 CC)을 원산지로 정의한다. 이는 완전생산(WO)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산 젓소를 미국에서 수입 후 키워서 한국으로 수출한 경우 원산지는 캐나다가 된다. 그러나 이 젓소와 역내산 젓소를 통해 출생하여 키운 소는 미국산이 된다. 제 02류에 분류되는 쇠고기의 예로 캐나다산 소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도축하였을 경우 원산지는 미국이다. 각국의 협정문을 보면 '불인정 공정' 또는 '충분 가공원칙'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역내에서 해당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은 품목

별 기준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나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공정은 세번변경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칠레, 한-EU FTA 등 모든 협정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불인정 공정' 항목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품목별 기준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특이한 것이 바로 도축이라는 가공공정인데 각국의 FTA에서는 이를 불인정 공정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를 충분한 가공이라 하여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관세율을 보면 제02류에 분류되는 쇠고기는 양허품목으로 양허유형 H로서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된다. 올해는 1년차로 27만 톤까지는 37.5%가 적용되고 그 물량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된다.

한국인이 즐겨먹는 대창 위 등 소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의 관세는 어떤가. 관세율표에서는 이를 설육(meat offal)이라고 표현하여 관세율표 제 02류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제05류에 분류하고 있다. 설육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도살된 동물의 내장과 내부기관을 말한다. 소의 설육은 제0206호에 분류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CC이므로 캐나다산 소를 도축하여 얻어진 식용 설육은 원산지가 미국산이 되고 양허유형은 H로서 이 역시 15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품목으로 올해 관세율은 16.8%이다. 하지만 소의 위나 장은 식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 0206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 제0205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제0504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CC로 역외산 소를 역내에서 도축하여 얻은 위 장은 제01류에서 제05류로 세번변경이 되었으므로 원산지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수출입업자는 한미FTA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 상품교역 부분에서 특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인 원산지 규정은 크게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분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 FTA는 원산지 규정 중 부가가치 계산방식에 순원가법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다른 협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순원가법은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의 하나로 비원산지나 원산지재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의 순원가만 계산한

다. 순원가법은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엔진), 제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제8409호(엔진 부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자동차), 제8706호(샤시), 제8707호(차체) 및 제8708호(자동차 부품)에만 적용한다. 즉 상기 품목은 공제법과 집적법, 순원가법 등 3가지 부가가치 계산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 일반물품과 섬유·의류 물품으로 달리 규정돼 이에 대한 해석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소기준도 다른 협정과 달리 제6장 부속서 4-가에 농수산물에 대해 품목군별로 구분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발효한 협정문에서는 대부분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충분공정과 불인정공정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협정문 본문에 정해져 있는데 비해 한·미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기재되어 있다. 한·미 FTA에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상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협정문 제6.1조).

- 1) 어느 한 쪽이나 양 당사국가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 생산된 상품인 경우 또는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이거나,
- 2) 2개국가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부속서 4-가(섬유·의류 제품) 또는 부속서 6-가(일반물품) 기준에 따라 세번변경,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또는
- 3)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등

이러한 세 가지의 기준들 중에 하나를 완전하게 충족해야만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포함비율 또는 가공공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은 각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했다. 협정문에는 부가가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6.2조).

- 1) 공제법(Buid-down Method)은 조정가치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으로 원산지재료비 비율이 낮고 가공비 비율이 높을 때 적용하면 유리하다.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조정가치}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2) 집적법(Build-up Method)이다. 집적법은 생산자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비가 상품의 조정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역내가치로 보는 방식으로 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경우 계산하는 절차가 유리하다.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text{조정가치}} \times 100$$

3) 마지막으로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이다. 순원가법은 공제법의 일종으로 총원가에서 판매비용 등 일정비용을 공제해 계산한다.

$$\text{부가가치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text{순원가}} \times 100$$

순원가는 총원가에서 “로열티·운송·포장 관련 비용 및 비허용 이자비용, AS비용, 마케팅비용”을 공제한 원가를 말한다.

한·미 FTA에서도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규정에 대해 완화되는 규정인 특례규정, 즉 보충적 기준을 두고 있다.

1) 누적기준(협정 제6.5조)

한·미 FTA에서는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을 인정하고 있다. 재료누적은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인정하고, 공정누적은 상대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으로 인정해준다는 개념이다.

2) 최소허용기준(협정 제6.6조)

최소허용기준은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이라고 하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면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한·미 FTA는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인정해준다.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속서 6-나의 HS 24류 이하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자세한 규정검토가 필요하다.

3) 대체가능 상품·재료(협정 제6.7조)

대체가능상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은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해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역내산 재료와 역외산 재료를 함께 사용하지만 재료별로 물리적으로 구분해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업의 재고관리기법(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재료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이때 재고관리기법은 일정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4)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협정 제6.8조)

수출입하는 완성품에 부속돼 인도되는 부속품, 예비부속품, 공구는 해당 완성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히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그 부속품 등을 모두 함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해당 품목은 전자제품코드, 덮개, 매뉴얼, 에어컨 먼지수집기, 예비타이어, 자전거 도구세트 등이다. 그러나 완성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적용되면 부속품 등은 각각 원산지 성질별로 구분해서 계상해야 한다.

5) 상품의 세트(협정 제6.9조)

세트 물품이란 품목분류에 관한 통칙에 따라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물품이 세트로 구성돼 물품의 기능, 용도 등에 따라 구성 물품 전체를 하나의 세번으로 분류한 물품을 말한다. 한·미 FTA

에서도 세트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면 세트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 단, 세트 물품을 구성하는 원자재 중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 상품의 조정가치의 15%(섬유관련 제품은 10%)를 초과하지 않을 때 원산지로 인정한다.

6) 소매용·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용기(협정 제6.10조, 11조)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단, 통합품목분류표상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에 한함)는 해당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적용되면 원산지를 고려한다. 즉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재료비를 산정해 반영한다. 단,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 기타 정의조항(협정 제6.22조)

한·미 FTA는 완전생산기준을 별도 장이 아닌 정의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의 순원가, 재생용품, 총원가 등은 정의조항에서 기술하므로 관련된 부문의 참고가 있으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당히 난해하게 구성돼 있다. 아울러 2007년 협상이 종료됐기에 HS 2002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협상이 종료되면서 HS는 두 번 개정돼 올해부터는 HS 2012가 적용된다. 하지만 HS 2012가 개정된다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HS 2002 버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버전으로 어떤 목적으로 새롭게 분류기준을 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러 개의 HS 6단위 물품이 하나의 새로운 HS 6단위로 통합되면 각각의 HS 6단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6단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일부 한·미 FTA 협정문에 미국의 품목분류번호도 기재돼 있는데, 이 번호가 변경돼서 이를 연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HS 협약

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지만, FTA 체제에서는 HS 변경에 따라 각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새롭게 수정하고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어와 수출기업 모두 한미 FTA를 통해 관세절감효과 및 통관·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완화효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바이어는 한미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 및 가격 절감분 활용한 마케팅 강화, FTA 수혜품목으로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국으로의 수입선 변경(고품질 한국산 수입 여력), 소비자 수요 증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알로에 음료를 수입하는 P사는 발효 후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수익성이 확대되자 수입 품목과 물량을 늘려 현재 월마트, 샘스클럽 등 글로벌 유통체인에 납품 중이다. 전기제품을 취급하는 C사는 기존의 중국 수입부품을 한국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제품 성능이 향상됐다. 미국 수출기업은 한미 FTA가 신수요창출, 아시아 전략시장으로서 한국 활용,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A기업의 경우,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덕분에 한국에 생산 공장과 R&D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 시장의 통합적인 생산과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 다수의 미국 기업이 한미 FTA로 넓어진 한국시장을 위해 지사 및 생산법인설립을 적극 고려해 FTA의 교역 및 투자유치확대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발효 전과 후의 수출입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국가에서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11년 약 562억 달러에서 '16년 665억 달러로 증가하여 수출증가 효과가 두드러졌다. 미국 또한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한-미 FTA가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이에 따른 원자재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총 수입액이 지난 5년 간 22.5%나 감소하였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46억 달러에서 432억 달러로 3.1% 감소한데 그쳤다. 한-미 FTA의 발효 이전과 비교해 지난 5년간 교역, 투자, 서비스 규모가 크게 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협

력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가 양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에 있어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조율을 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닌가 싶다. FTA란 의미 자체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한국과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의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측이 자기주장만 내세울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의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분야와 섬유 등 우리나라는 많은 득을 본 면도 있다. 한국이 미국에게 승용차 관세 폐지를 요구한 것보다는 미미하지만 협의점을 찾았고 섬유에서는 수입액의 61%의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양국에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아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수출입이 원활하여 다른 나라와도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

2.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한-EU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FTA 협정문이 아닌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본 의정서에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일반원칙과 관세환급 및 면제, 원산지의 증명, 검증 등 원산지의 실체적 규정과 절차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도 동 의정서 부속서(Annex II)에 명시하고 있다. 즉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하고 각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⁴²⁾ 품목별 원산지판정

42) 정재우, 이길남,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3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09, p.156.

기준에서는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를 반영한 자세하고도 정교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의정서 제2조 및 제4조는 '특혜관세의 목적상 당사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제품은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로 규정하여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완전생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생산기준 이외에도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공장도가격(EXW)을 기준가격으로 한 MC방식에 의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외산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EXW가격 45%이하)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만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미소기준의 경우 역외산 재료가 제품가격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하게 되지만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한-EU FTA 섬유류 미소기준

구분	한-EU FTA	한-미 FTA
섬유류 미소기준 (50~63류)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 적용 (8~30%, 중량 및 공장도 가격기준 등 다양)	중량기준 7% (섬유협정)

대체하여 사용가능한 원재료 및 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재고관리법에 따라서 그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으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도 대체가 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원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일정수준 이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관리를 위해서 구분 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의 원산지 판정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상대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세트

가격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트물품 기준, 제품의 생산에는 투입되었으나 최종재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원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간접재료 기준, 제3의 국가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서 단순한 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 협정에서는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처음으로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주요 공산품의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다음과 같다.

* 한-EU FTA 주요 공산품 및 농산물 원산지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차: 부품비율 45% 이하로 비원산지 인정 ▶ 자동차 부품: 부품비율 50%이하, 세번변경기준 적용 ▶ 기타자동차: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 원재료 허용치 50% ▶ 철도차: 세 번변경기준, ▶ 자전거: 역외 원재료 45%
기계, 전기·전자	▶ 세번변경기준, 역외 원재료 사용비율 45~50%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기준(Fabric Forward): 한-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침 ▶ 다만 100% 전량 수입하고 있는 비스코 레이온사, 나일론 스테이플사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역외산 사용 가능
화학제품	▶ 세번변경기준
비철금속	▶ 세번변경기준 적용(구리와 알루미늄 제외)
신발	▶ 역외 원재료 갑피와 안창사용 인정, 다만 갑피의 안창 부착은 불허 부가가치기준 50%이하 기준 선택 적용 가능
쌀·녹차·인삼·참기름 및 관련제품	▶ 완전생산기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완전생산기준
수산물	▶ 완전생산기준
담배	▶ 역외 원재료는 30%까지 인정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제품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높였고, 라면, 국수, 비스킷, 어묵 등 수출주력 가공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기준의 예외물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협정발효 후 5년부터 특정요건의 충족시 관세환급⁴³⁾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상대국의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그 요건을 살펴보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對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한다. 협정이 발효된 지 5년후부터 일방의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세환급제도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한-미 FTA를 참고하여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역외가공지역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협정 발효 후 1년 후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3.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그 구성을 살펴보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운영절차, 품목별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해석주석의 3개부록, 개성공단역외가공에 관한 양해각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원산지물품의 범위에는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완전생산기준), 일부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물품으로서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등을 충족하는 물품(실질적 변형기준)

43) 수출용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자재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이 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선 적용되고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물품은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RVC) 40%이상 또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며 RVC 계산시에 해당 당사국은 선택에 따라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ASEAN 국가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RVC 계산시에 공제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원산지 판별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농수산물에 한하여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누적을 채택하고 있다. 씨를 수입하여 수출당사국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경우 씨가 수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되며 수산물 또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양식되거나 길러진 경우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로서 인정을 받는다.

부가가치기준은 RVC 40 ~ 70%이상으로 해당 품목별로 다양하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 한-ASEAN FTA 부가가치기준

구분	커피	한천	김치	에어컨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목제가구
HS코드	0901.12~ 0901.22	1302.31	2005.90	8415.10	8702.10 8702.90	8703.21~ 8703.90	8704	9403.30~ 9403.60
기준	FOB 45%이상	FOB 70%이상	FOB 60%이상	FOB 45%이상	FOB 45%이상	FOB 45%이상	FOB 45%이상	FOB 60%이상

예를 들어 일부 의류제품에서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봉제요건을 규정하고 직물의 경우 최소 2이상의 예비 및 마감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규정하는 등 예외적으로 특정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보충적 규정으로 원칙적으로는 양자누적이 인정되지만 일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누적조항을 배제하는 부분누적이 채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 동물(제1류), 육과 식용 설육(제2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제7류),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커피(0901.1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2401) 등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해 원산지

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의 양자누적으로서 교역당사국이 아닌 타 국가의 원자재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예컨대 한-베트남 교역의 경우 베트남 물품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산 원자재가 포함되었다면 이는 원산지 재료가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만약 유사누적이거나 완전누적이 규정되었더라면 이 경우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ASEAN FTA 협정에 대한 미소기준은 통상적으로 FOB가격 1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물품 총중량의 10%미만일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부속서 3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제8조에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중간재료의 원산지 규정을 살펴보면 중간제품이 원산지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그 중간제품 제작에 사용된 중간재는 모두 원산지 자격을 얻게되는 롤업의 근거규정이 없다. 다만 중간제품이 그 원산지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원산지 재료의 부가가치를 가치에 포함하는 추적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물품이 2이상의 비당사국 영역을 지나치면서 환적된 경우 그 경유가 지리적이유 또는 운송요건만 고려되어야 하고 그 물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아야 하며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단순 환적화물의 경우 경유국 세관 등의 통제 하에 있어야함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가 역외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다시 수입되어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의 생산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FOB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고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60%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역외지역은 개성공단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세안 회원국별로 HS 6단위기준 각각 100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6장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마케팅활동 등을 하며,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일련의 계획 또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한 FTA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란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국의 FTA별로 규정한 일반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원자재 조달 및 생산방법을 도출해내어 최적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산지 조달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일련의 사업화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FTA는 역내국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보다 완화시킴으로써 수출입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각각의 FTA 협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무역기업들이 FTA 특혜관세 효과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Business Model)을 개발하고 및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FTA 활용의 핵심으로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원산지분야의 수익모델을 수출입 기업들에게 적극 제시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수출의 확대, 글로벌 세계시장에서의 원자재 조달 등을 위한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각국과의 FTA별로 최적의 특혜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역외가공규정을 이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중국에 원자재 수출 후 생산된 반제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가공한 다음 FTA 체결 국가로 수출

하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한-미, 한-EU, 한-ASEAN 등 FTA별 원산지 규정에 맞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기업은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을 제조할 단계부터 수입 원자재의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어야만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FTA 국가별로 맞춤형 제품생산이 가능해야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값싼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ASEAN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한-ASEAN FTA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고, ASEAN 회원국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은 FTA와는 상관없이 어느정도 수동적인 자세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수출업체가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적극적으로 FTA 원산지기준에 맞는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FTA 혜택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FTA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수립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협정을 체결할 때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보완적으로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보충적 기준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상품 HS코드를 인지해야 한다. 둘째,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인지해야 하고 셋째, 원산지 결정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수입선의 변환, 생산방식 등의 변경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적용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 특정공정 수행기준 활용 FTA 비즈니스모델

상대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기가 쉽고 따라서 효율적으로 특정공정 원산지기준을 활용하는 모델이다. 각각의 협정에 따라 수출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별도로 특정가공공정을 규정

하고 있다.

한·미FTA에서 석유화학제품 등의 경우에 역내에서 생산된 가공공정수준에 따라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원산지 관련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공정기준을 활용할 경우에 원자재의 세번(稅番)이나 부가가치 발생 수준 등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 없으므로 특정공정 과정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원산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TA 활용전략으로 위기를 벗어난 A화학회사를 들 수 있다. A사는 글리신, 자일리톨 등 정밀화학품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FTA는 매출과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전문인력의 부족, 세번분류 및 원가관리의 어려움, 원산지판정·관리능력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미침으로 거래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복잡한데다 원가자료의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 세번을 변경하지 않아도 해당기업의 품목에 전문성이 있는 화학반응만 일어나면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가공공정’의 원산지기준을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A사는 한·미FTA 발효 후 한해 260만 달러(약 22억원)를 수출하여 해외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0%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판단할 때에 화학품목류에 대한 대미수출업체들이 증가할 전망으로 볼 수 있다. 공정변화가 없는 한 원산지증명서 한번 발행으로 원산지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게 될 때에 걱정되는 기술관련 서류 및 원가자료 제출, 사후검증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

2. 해외임가공 및 반제품 현지조립수출 활용 모델

해외임가공 장소 등을 FTA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이동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해외임가공 품목공장에서 완(반)품목을 수입할 때 감세규정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다시 재수입할 경우에 원자재는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재고관리를 해야하는 등 부대업무절차와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을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동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FTA를 활용하여 임가공 함으로써 원가를 경감시키고 수출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가 해외임가공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들 수 있다. B사는 산업용 안전화의 국산부자재(갑피 등)를 외국에서 임가공한 다음 완성품으로 만들어 재수출하는 업체이다.

이 회사는 국산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중국에서 임가공한 신발갑피를 국내로 다시 가지고 들어온 다음 추가 가공공정을 마친 안전화를 재수출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의 인건비, 임가공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날이 갈수록 수익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B사는 FTA모델을 활용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극복하였는데, 비슷한 처지의 영세 원,부자재 생산협력업체 15개 업체와 함께 인천세관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인천세관 인증팀은 B사 등 업체를 찾아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해외임가공 국가를 중국에서 FTA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 변경하였고 가죽, 원단 등의 세부 품목분류도 검토하였다. 원,부자재 납품회사의 원산지 확인서는 물론 한-ASEAN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11개 협력업체를 인증 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해외임가공 장소를 FTA 체결국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관세특혜까지 적용받아 원가절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영세 원,부자재 생산업체들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다. 한-ASEAN FTA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한해 상반기 수출이 300% 이상 증가된 것도 바로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도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섬유업계 FTA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

섬유제품은 각국마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산업이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고관세품목으로 FTA의 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섬유제품은 한-미, 한-EU FTA의 대표적인 관세양허 품목이다. 한·미FTA의 경우 최대 30%대 수준의 관세혜택이 전망되는 산업이다.

FTA를 활용하기 위한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난해한 원산지규정의 올바른 해석으로 관세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활용한 C사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기업은 방직용 섬유제 가방 등을 제조하여 미국 등 북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경쟁국가 기업들보다 20% 가격 인하와 함께 국가브랜드 강화에 따른 제품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복잡한 원산지기준 등으로 FTA 협정내용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 내에서 제조한 원사로 직물을 짜고 옷을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Yarn forward 기준)도 회사를 어렵게 한 요인이다. 섬유의 다단계생산구조로 인해 원산지증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기업의 영세화에 따른 무역 전담인력 부족, 원산지검증에 대한 부담감도 많았다. 따라서 C사는 FTA 활용 대책을 세웠다. 섬유품목 Yarn forward 기준의 예외조항 모델을 찾아냈고, 재단, 봉제공정시 방직용 섬유제 백(Bag) 등의 원산지도 인정받았다. 원가·원자재내역서 등의 복잡한 입증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서 가공공정 입증서류만 관리하면 되어 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기업이 얻은 교훈은 섬유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관세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는 사실이다. 관세(17.6%)가 경감되어 이를 통해 발효 2개월간 약 3,000만원의 비용을 경감시켰고 수출액은 238%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섬유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도 원산지만 잘 관리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FTA가 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4. 역내국 생산·물류거점 활용 모델

FTA 체결상대국에 생산시설 등을 늘려 FTA의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FTA 체결상대국에 생산기지를 설치, 물류비용을 경감시키고 상대국가의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원재료, 반제품은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로 수출하고, 체결국가내에

서 제조된 완제품은 FTA를 활용하여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뛰어난 품질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부품생산업체 D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미국 자동차부품회사의 아시아지역 납품을 총괄하고, 국내의 생산기지 역할, 물류관리를 대행하는 자동차부품생산업체로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FTA를 활용하기 전에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쇄도하였다. FTA 활용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이러한 사유로 인해 피할 수 없이 FTA의 활용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여 물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생산시설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하였다. 따라서 D사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FTA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한-미 FTA 발효 5개월 후부터 원산지관리전담팀을 가동하여 FTA 교육, 활용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가동하였다. 또한 대미수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미국 현지에 1,500평 규모의 생산기지도 추가적으로 건립하였다.

원,부자재 또한 FTA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반출하여 미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물류비용을 줄였다. 이 기업은 이러한 시스템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른 FTA 협정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 결과로 인해 전년도의 같은 기간 수출액보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100% 이상 늘었고, 미국 현지생산거점도 3배이상 확장되어 한-미 FTA의 수혜를 적극 보고 있는 것이다.

5. 친환경품목 FTA 수출형 모델

FTA를 활용하여 친환경제품의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높은 기술력과 최고의 품질을 가진 친환경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을 FTA의 활용을 통해 가격부담을 상쇄시키고 가격경쟁력도 높여나가는 것이다.

환경보호 등에 관심이 많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저가격 친환경제품 시장을 이끌어 나

갈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페타이어를 활용하여 토목건축용 방수재를 개발·수출하는 E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기업의 생산품목이 세계 최초로 점착유연형 방수제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FTA를 활용하기 전에는 제목의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고, 유럽 등지로의 수출실적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당연히 FTA 활용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다. 주요 품목의 한-미 FTA 기본세율이 무세(無稅)인 관계로 FTA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여 FTA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FTA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세관 등의 방문컨설팅, 설명회, 사전진단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내 모든 수입품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되고 통관시간이 줄어드는 등 이를 통해 돌아오는 비관세혜택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세관의 원산지 사전진단서비스를 받아 생산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보관방법 등 원산지에 대한 관리체계도 체계적으로 갖추었다. 이 회사는 FTA를 적극 활용한 이후 대미수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3%나 증가하였다. 3일 이상이나 소요되던 통관시간도 만 하루내로 줄이게 되었다. 무세율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FTA의 활용으로 인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제1장 연구결과의 요약

국제통상의 중요한 룰에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중심주의가 지배하는 작금의 국제무역의 트렌드하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패러다임인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비하기 위해 그 이론적인 분석과 한-미, 한-EU FTA 등 주요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활용된 실제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미국의 한-미 FTA, NAFTA 재협상, 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의 급부상과 이와는 반대로 중국 중심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활발한 추진과정 등 최근 G2국가의 국제무역의 반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FTA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해 연구하면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그 개념과, 중요한 특징 등 이론적인 연구모형과 실제의 기업 적용사례 등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등을 분석하여 기업들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FTA 등의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최근들어 갈수록 추진되는 속도와 양이 증가하여 한-미 FTA와 같은 양국가간 체결되는 협정과 동시에 RCEP 등과 같은 다자간 국가들과의 FTA도 동시에 적극 진행되고, 모습 또한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나타나고 있고 규율하는 범위도 물품 및 서비스를 넘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이전에는 규정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매우 복잡다단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FTA의 흐름과는 반대로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각국과 이미 체결된 FTA 협정의 재협상 및 폐기 등을 언급하고 있고, 한때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의 무력화를 이끌었다. 따

라서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을 이끌고 있는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중국이 RCEP을 선도하면서 실질적인 지역 FTA협정의 리더국가로 발돋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간의 지역무역협정은 다자간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한 전제인 무차별대우원칙, 즉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게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무역협정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간의 관세 적용에 있어서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전제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관세상의 특혜를 선점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국가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양자간 FTA 및 다자간 지역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의 선점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주요국가들 및 거대경제권역들과의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계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렇게 전세계 FTA 시장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기업이 이러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FTA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관세율 인하 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국가간의 정치, 경제적인 협력의 폭을 확장하고 또 하나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역내산과 역외산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러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충족해야지만 실질적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실제로는 각각의 FTA별로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한-미, 한-EU, 한-ASEAN FTA 등 가장 중요한 FTA별로 그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해본 결과 한-미, 한-EU FTA에서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상대

적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선진국일수록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국산업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자체로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세계시장에 있어 기타국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비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하나의 강력한 무역 제재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장 정책제언

1.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활용부진의 원인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참여와는 반대로 현재 상당수의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너무나 복잡다단하여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각각의 개별국가마다 서로 다른 복잡하고도 어려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정의됨으로 인해 그 활용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너무나 지나친 부담이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의 한계 등으로 인해 FTA 활성화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로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와 비교하여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부른다. 둘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지나친 엄격성이 문제이다. FTA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위반하고 양당사국 간에만 상호 배타적으로 관세 혜택을 주는 배타적 협정이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을 할 경우에는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가 어려울 수도 있고, 면제받았던 세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 벌금까지 징수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개별기업의 과도한 비용을 들 수 있다. 각 개별국가와 체결한 FTA의 협정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업은 같은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어떤 국가, 경제권으로 수출하느냐에 따라 원자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부담과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FTA 체결국가가 많아질수록 이러한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과는 별도로 체결국가별

로 상이한 행정절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적인 비용도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고 행정비용과 생산비용에 추가적인 과도한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FTA에 대한 이러한 다수의 문제점들은 결국 기업의 관심도 결여로 연결되어,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많은 수의 기업들이 FTA 체결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RCEP, 한-중-일 FTA 등의 추가적인 FTA 발효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개별기업들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이해도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하) 전체 수출기업의 50%이상으로 우리나라 개별기업들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낮은 이해도 수준 또한 FTA 활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중요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기업들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FTA 활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개별기업 입장에 있어서 FTA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고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이러한 다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관점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별기업차원에서 바라본 개선방안과 중앙 또는 지방정부차원의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개별기업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 개선방안을 보면, 기업 자체적으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세관 등)의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기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실시된 여러가지 통계조사를 알아보면 기업에 있어서 무역을 전담하는 인력의 채용은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등 비용문제로 무역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FTA의 활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FTA 원산지아카데미 등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FTA 컨설턴트 등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관리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전문인력 또한 양성하고 있다. KOTRA에서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FTA 활용업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기업의 수요에 상응하는 각각의 개별업종별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각 지방 상공회의소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의 수출입업무 종사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및 FTA 활용 전문가 양성교육 등의 수준높은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세청에서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무역업무에서의 국선변호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016년부터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세관에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데 집중적인 지원대상으로는 최근 발효된 한-중 FTA의 관세혜택이 가장 큰 품목 중 하나인 기계제품과 철강, 의류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각 지역별로 공익관세사가 배치되며, FTA 활용이 미진한 중소기업과 농공산업단지 등을 주로 방문하면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의 상담은 해당 품목이 한-중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그 포커스를 맞추고, 관세인하율 등 분야를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게 되는 통관, 관세 환급 등의 애로사항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상담도 동시에 실시한다. 작년도에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약 400여개의 기업현장을 실제 방문하면서 업체에 대한 지원, 애로사항 청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정 공익관세사의 경우에는 물김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던 여러 가지 서류를 수산업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적으로 간소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관련업계의 수출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

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FTA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많았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상당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교육 및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분야의 난해함,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 자체적으로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가 다소 힘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아주 지역적인 애로사항만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상공회의소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전국 시·도⁴⁴⁾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원산지 증명업무 처리절차와 그 기준, 품목별 특혜관세 적용 현황 등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각 세관에서도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FTA 상설교육센터를 제공하면서 ‘찾아가는 원스톱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 대응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사유로 FTA의 활용과 원산지증명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실태를 진단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 관리업무 매뉴얼의 제공,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지원하는 원산지관리 아웃소싱 사업과 OK FTA 컨설팅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KOTRA 또한 FTA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 상공회의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이론적인 교육 및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등에 관한 실무적인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별기업들은 이러한 각 기관들의 지원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무역실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정부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각 FTA협정마다의 복잡하고 난

44)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전북 등.

해하며 상이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일관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날로 발전, 진보하고 있는 기술과 전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아웃소싱의 일반화로 인하여 이러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 난해성과 체결 당사국간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협정의 본질적인 특성상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엄격성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결되는 FTA 협정마다 복잡, 다양,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그 정도가 가중되고 이를 협정별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FTA 협정이 여러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만의 일정한 기준없이 선진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에 FTA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 FTA 협정의 재협상 등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보다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만의 한국형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예측가능성 및 적용가능성을 가지고 이에 대비하며, 발생하게 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는 등 기업의 FTA 협정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는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관련된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홍보 또한 문제인데, 이미 관련된 정부기관의 기업지원 콘텐츠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관성이 결여된 중구난방식의 기업지원 프로젝트들이 실제로는 개별기업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면서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먼저 주로 인터넷 포털이나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해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 인바운드(In-bound) 방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주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정부 등의 관계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개별기업들에게 다가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방식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먼저 개별기업들의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의 우위에 있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전수하면서 이를 통해 FTA를 적극 활용하게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

키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FTA와 관련된 기업활용 정책의 컨트롤타워 설치 또한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FTA 관련 주무관서는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할 수 있으나, FTA 활용에 대한 교육, 정책집행 등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동시에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KOTRA,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통상관련 공공기관에서도 FTA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업무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FTA 관련 업무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외성을 담보하는 것은 일정부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산되어 있는 지원역량을 중앙 컨트롤타워의 일관성있는 통제하에 두게 되면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이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되어 이용될 수 있고, FTA를 활용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기업들에 대한 전파속도 또한 높일 수 있는 등 지원사업의 기획과 수행역량이 한층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 관세청(2008),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 관세청(2014), 「FTA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40선」
- 외교통상부(2012),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 윤영호(2009),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출판사
- 조만희(2014),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자유무역협정」, 삼일인포마인
-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 FTA 활용 가이드북」
- 최홍석, 류원택(2004),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한국관세학회(2010), 「FTA 원산지 심사(검증) 매뉴얼」
- 한국무역협회(2012), 「2013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 길라잡이」
- 한국무역협회(2012), 「FTA 활용 성공사례집 땡큐, FTA」
- 한국무역협회(2012),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FTA 원산지관리」
- 강준하(2011),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에 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pp.33~58.
-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pp.101~118.
- 김영춘, 박홍규, 송병준(2015),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pp.3~28.
- 박명섭, 조미진, 이병문(2014), “한국 FTA의 품목별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일관성 분석”, 「무역학회지」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pp.59~85.
- 서창희(2011),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를 둘러싼 분쟁: 스위스산 금괴 관세추징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연구」 제15권 제1호, 경희대학교, pp.103~122.
- 손수석, 최명국(2011),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 송경은(2015), “산업별 FTA 이행 동향: 2014년 MTI 1단위 기준 주요 특혜 수출입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pp.43~104.
- 안재진(2008),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pp.51~80.
- 윤준웅, 이춘수(2015),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201~223.
- 이상진, 김무한, 김형철(2009),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0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155~174.
- 이영수, 권순국(2011), “FTA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제5호, pp.493~518.

Bhagwati J.(2008),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John J. Barceló III(2006), "Harmon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WTO System", Cornell Law School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No.06-049, Cornell Law School.

OECD(2003), "Regionalism an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livier Cadot, Jamie de Melo, Alberto Portugal-Perez(2007), "Rules of origin for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implications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of EU and US experience",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vol. 22 no. 2, pp.288-319.

Olivier Cadot, Antoni Estaradeoral, Akiko Suwa Eisenmann(2006),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Stefano Inama(2009),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rldbank(2003), "Rules of origin in free trade agreement".

World Customs Organization(2004), "Customs/business meeting on the Rules of origin".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

관세청 FTA 포털(<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관세청(www.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

기획재정부(www.mos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www.fta.go.kr)

세계관세기구(www.wcoomd.org)

세계무역기구([www.세계무역기구\(WTO\).org](http://www.세계무역기구(WTO).org))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http://iit.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stat.kita.net>)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FTA 무역종합지원센터(www.okfta.go.kr)